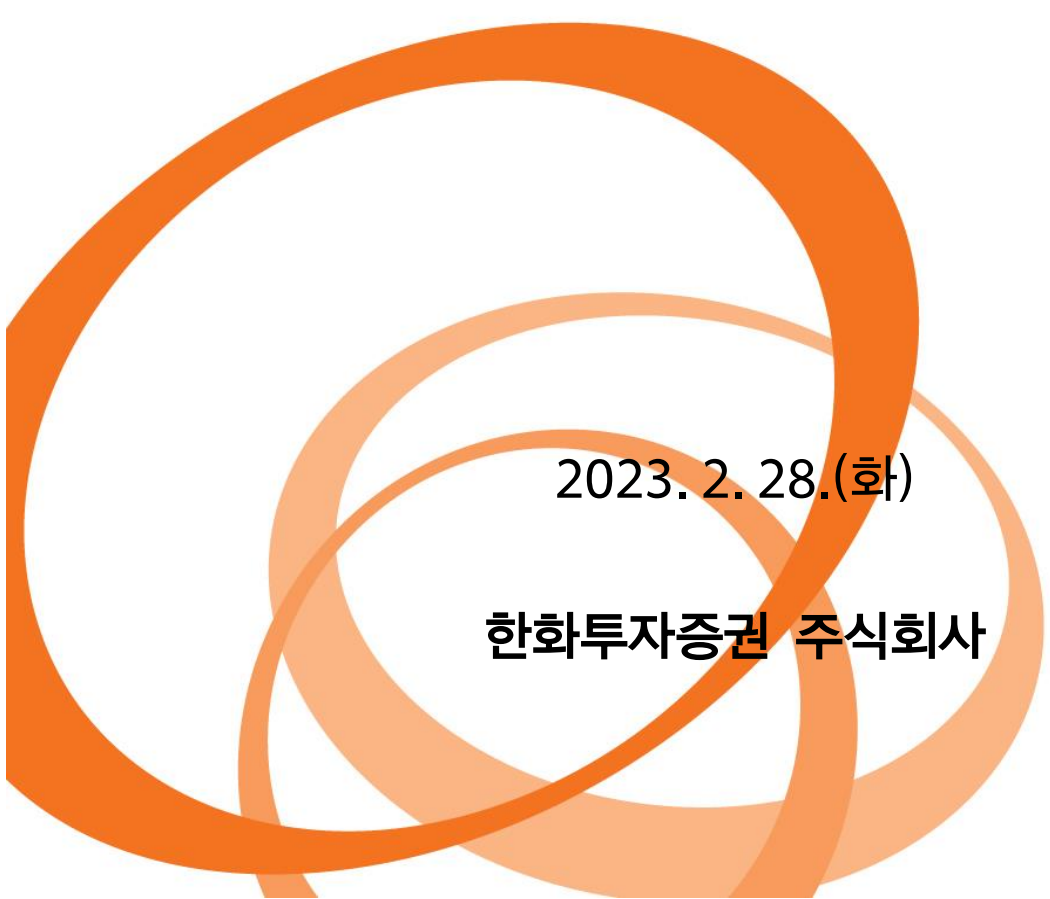


2022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3. 2. 28.(화)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확 인 서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희 백

(서명) 

목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1 -
나. 지배구조 현황	- 3 -
다. 관련규정	- 6 -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 7 -
나. 구성(이사)	- 11 -
다. 활동내역	- 17 -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 24 -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 26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 27 -
나. 구성	- 27 -
다. 선임기준(자격요건과 추천 절차)	- 28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29 -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 32 -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42 -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44 -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44 -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45 -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 47 -
바. 사외이사 평가	- 48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49 -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51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53 -
차.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3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55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55 -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 56 -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56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56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57 -
사. 최고경영자 승계 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 57 -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 58 -
나. 구성	- 62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63 -
라. 감사보조조직 등	- 69 -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 70 -
나. 구성	- 72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73 -
8. 내부거래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 77 -
나. 구성.....	- 77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78 -
9. 경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 81 -
나. 구성.....	- 81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82 -
10. ESG 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 85 -
나. 구성.....	- 85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86 -
11.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90 -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90 -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 괄.....	- 91 -
나. 구 성.....	- 91 -
다. 권한과 책임.....	- 93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95 -
2. 보수 체계	
가. 주요사항.....	- 98 -
나. 보수 세부사항.....	- 100 -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100 -

[첨부]

[별첨 1] 정관.....	- 103 -
[별첨 2] 이사회 규정.....	- 115 -
[별첨 3] 보수위원회 규정.....	- 120 -
[별첨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122 -
[별첨 5]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 124 -
[별첨 6] 감사위원회 규정.....	- 127 -
[별첨 7] 위험관리규정.....	- 133 -
[별첨 8] 경영위원회 규정.....	- 147 -
[별첨 9] ESG 위원회 규정.....	- 149 -
[별첨 10] 지배구조내부규범.....	- 151 -
[별첨 11] 윤리규정.....	- 162 -
[별첨 12] 내부통제기준.....	- 165 -
[별첨 13] 내부거래심의위원회 규정.....	- 203 -
[별첨 14] 환경경영 규정.....	- 207 -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한화투자증권은 고객, 주주,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을 수시로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구조의 안정성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해임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서,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도 부합합니다.

위와 같은 견제 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의 독립성

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구현하여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 위원회는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의 권한과 의무를 이사회 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제 16 조(이사의 의무)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1 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 12 조(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3) 지배구조의 전문성과 다양성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제한하여 이사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에서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분야 중 4 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

구분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금융	●		●	●	●	●
경제	●					
경영				●	●	●
회계		●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사의 자격요건에 성별, 연령, 국적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2 년말 당사 이사회는 외국국적 사외이사 1 명, 여성 사외이사 2 명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성을 보유한 이사회 구성이 최대한 융합되어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당사에서 이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객관성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 전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및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go.kr>)에 공시하여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 이사회 규정, 각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 전문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당사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결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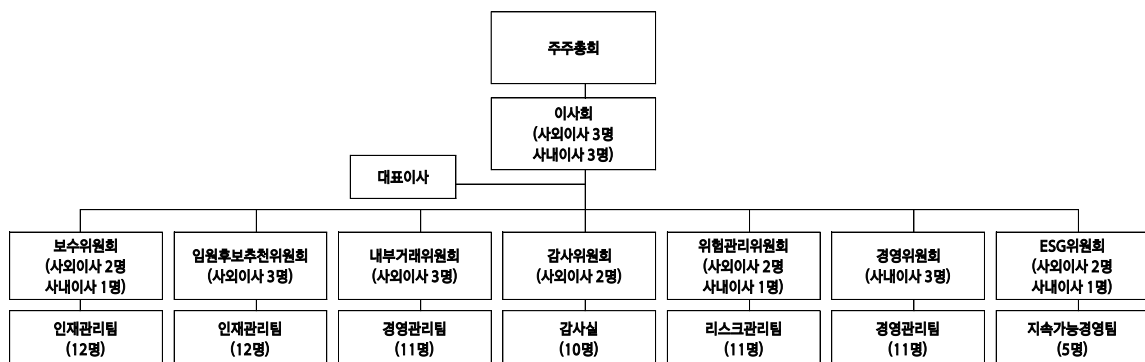
회사 홈페이지 및 지배구조 관련 공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 회사소개 → ESG 경영 →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연차보고서
 - https://www.hanwhawm.com/static/hanwha/esg/CP_801_4p.htm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 공시 → 공시 현황
 - <https://dis.kofia.or.kr>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22 년 12 월말 기준)



※ 특이사향: 김민수 사내이사 2022 년 12 월 31 일자 사임

2) 지배구조의 특징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수는 3 명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정관 제 29 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당사는 2022 년 제 61 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사외이사 1 인, 사내이사 1 인 재 선임, 사외이사 1 인 신규 선임을 통하여 사외이사 4 인, 사내이사 3 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나, 2022 년 5 월 노태식 사외이사가 일신상 사유로 중도사임 하면서 사외이사 3 인, 사내이사 3 인으로 이사회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사임 사유로 이사회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차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사내이사를 배제하고 전원 사외이사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해상충을 완전하게 방지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2/3 로 구성하여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 기관	주요역할	구 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위원장 (사내/사외)	관련 규정
이사회	- 주요 의결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 정관 변경 등) - 경영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사항 등) - 재무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 투자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분의 처분 등) - 이사회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내 위원회 선임 및 해임 등) - 기타 - 주요 보고사항 - 위원회 시행 결과, 경영실적 보고 등	3 / 6	권희백 (사내)	이사회 규정
보수 위원회	- 주요 의결사항 -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결정 및 지급여부·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	2 / 3	선우혜정 (사외)	보수위원회 규정

내부 기관	주요역할	구 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위원장 (사내/사외)	관련 규정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 주요 의결사항 •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등	3 / 3	선우혜정 (사외)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내부거래 위원회	- 주요 의결사항 • 계열사와의 분기 누적 거래 50 억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 구매 등 거래 • 계열사와 단일 거래 대상 5 억원 이상 수의계약 등	3 / 3	김형태 (사외)	내부거래 위원회 규정
감사 위원회	- 주요 의결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이사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등) •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계획의 수립, 외부감사인 선정 등) • 기타(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2 / 2	김형태 (사외)	감사위원회 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 주요 의결사항 • 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해임 •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위험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 각종 한도 설정 및 한도 초과 승인에 관한 사항 • 위기상황 대처계획 • 위험관리집행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등	2 / 3	문여정 (사외)	위험관리 규정
경영 위원회	- 주요 의결사항 • 자기자본 5%미만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진출 • 자기자본 5%이하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의 취득, 처분, 건축 • 지점, 사무소 및 해외사업소의 설치, 이전, 폐쇄에 관한 사항 등 • 인허가 업무	0 / 3	권희백 (사내)	경영위원회 규정
ESG 위원회	- 주요 의결사항 • ESG 전략 및 정책 •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 3	문여정 (사외)	ESG 위원회 규정

다. 관련규정

- 첨부 1. 정관
- 첨부 2. 이사회 규정
- 첨부 3. 보수위원회 규정
-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 5.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 첨부 6.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 7. 위험관리 규정
- 첨부 8. 경영위원회 규정
- 첨부 9. ESG 위원회 규정
- 첨부 10.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 11. 윤리 규정
- 첨부 12. 내부통제기준
- 첨부 13. 내부거래심의위원회 규정
- 첨부 14. 환경경영 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경영진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사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하였으며,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1)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 년 경영목표·전략은 2022 년 4 분기 경영진 회의 및 12 월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수립하였으며, 2023 년 제 1 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2023 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2023 년 경영목표·전략 주요내용)

- 2023 년 경영목표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세가지 전략 방향은 변화 대응 능력 강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위기상황 기회 탐색입니다.
- WM 사업은 위탁 영업과 무관한 흑자구조를 정착하고, Trading 사업은 절대수익 추구를 통한 안정적인 손익구조 구축으로 회사의 손익 안정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Wholesale 사업은 외연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IB 사업은 기업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경영성과를 보고 받으며, 경영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 년 이사회에 보고한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제 61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2022 년 제 1 차 이사회('22.02.04.)
- － 2022 년 제 1 분기 경영실적: 2022 년 제 7 차 이사회('22.05.13.)
- － 2022 년 상반기 경영실적: 2022 년 제 11 차 이사회('22.08.12.)
- － 2022 년 제 3 분기 경영실적: 2022 년 제 14 차 이사회('22. 11.14.)

(2) 정관 변경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案)을 심의·의결합니다.

2022년 3월 3일 개최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 시 결의 요건 변경사항, 자본시장법에 따른 양성평등 규정 근거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을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이사회 규정 제8조)

(3) 예산 및 결산 승인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며,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이사회의 예산 승인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하며, 구체적 실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은 2023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2023년 1월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2022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23년 1월 초안을 마련하여, 2023년 제1차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이사회 규정 제8조)

감사위원에게 제출된 결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기준) 제 62 기 영업수익은 2 조 591 억원, 영업비용은 1 조 9,959 억원, 영업이익은 633 억원이며, 영업외비용 781 억원과 법인세비용 28 억원을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163 억원
- (연결기준) 제 62 기 영업수익은 2 조 1,143 억원, 영업비용은 2 조 704 억원, 영업이익은 438 억원이며, 관계기업 손실 267 억원과 영업외손실 731 억원과 법인세비용환입 84 억원을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476 억원

※ 제 62 기: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관련 규정: 이사회 규정 제8조)

- 2022년 조직의 중요한 변경 해당사항 없음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과 행위준칙을 반영한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과 준법감시인의 임면 시에 심의·의결을 합니다. 2022 년 제 14 차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 선임(연임)’의 건을 의결하였고, 제 15 차 이사회에서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이사회 규정 제 8 조, 내부통제기준 제 12 조)

〈주요 개정 내용〉

[제 14 차 이사회('22.11.14.)]

준법감시인의 임기 만료('22.11.30.)가 도래함에 따라 연임 승인

[제 15 차 이사회('22.12.27.)]

금융위원회가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 비중의 단계적 축소 시기를 3 개월 유예함으로써,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여전채 편입한도 유예 내용을 반영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 년 제 3 차 이사회에서 ‘2021 년 내부통제 활동 및 2022 년 내부통제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022 년 제 9 차 이사회에서 ‘2021 년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위험관리조직의 최상위 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반 위험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제 15 조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목표 및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인 위험 성향(Risk Appetite)을 결정합니다. 회사의 위험 성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 수준 및 리스크 감내 수준을 설정하며, 회사의 위험 자본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2 년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1 년 위험관리 종합보고: 제 1 차 이사회('22.02.04.)
- － 2021 년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제 9 차 이사회('22.06.27.)

(6)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 정책의 수립·평가

한화투자증권은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최적의 지배구조 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2016 년 8 월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을 포함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이사회 의결로 제정하고, 법률 시행의 취지와 법률 반영을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등 관련 사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운영·평가 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들은 지배구조내부규범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2 년 12 월 제 15 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및 후보군 관리 내역을 이사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7)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한화투자증권은 계열회사와 거래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기획관리 담당임원 및 경영관리, 재무관리, 법무, 컴플라이언스 부서장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내부거래심의위원회규정 제 13 조)

- 2022 년 9 월 30 일 내부거래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 제 1 차 내부거래심의위원회('22.10.19.)
 - 안건: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 계약
- 제 2 차 내부거래심의위원회('22.10.31.)
 - 안건: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IPO 대표주관계약
- 제 3 차 내부거래심의위원회('22.12.06.)
 - 안건: 임대차 승계, IPTV 서비스 계약
- 제 4 차 내부거래심의위원회('22.12.20.)
 - 안건: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ITO 위탁 계약

또한 계열회사 등과의 중요한 내부거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비상임) 3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사전 심의·의결함으로써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관련 규정: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 12 조)

2022 년 내부거래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 차 내부거래위원회('22. 03.23.)
 - 안건 1) '22 년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금액 변경
- 제 2 차 내부거래위원회('22.12.27.)
 - 안건 1) '23 년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및 예상금액 승인
 - 안건 2) ITO 위탁 계약

이 외에도 대주주 및 이사, 계열회사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행위를 관리·감독하고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사전 심의·의결합니다. (관련 규정: 이사회 규정 제 8 조)

2022 년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3 차 이사회('22.03.03.)
 - 안건: 주요주주와 회사간의 거래 사전 승인
- 제 5 차 이사회('22.03.23.)
 - 안건: 브랜드 라이선스 '21 년 금액 변경 및 '22 년 예상 금액 승인
- 제 15 차 이사회('22.12.27.)
 - 안건: 주요주주와 회사간의 거래 사전 포괄승인

나. 구성(이사)

1) 총괄

한화투자증권 정관 제 29 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총원 수는 3 명 이상 12 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지배구조법 제 12 조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원 수가 그 이하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최대 원수를 12 명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 간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2 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6 명의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 명, 사외이사 3 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 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취임 2 년 후 연임 시 '차회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며, 연속하여 5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정관 제 32 조)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법률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내규인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 제 8 조에 부합하는 자입니다.

2022 년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경영분야 5 명(김형태, 문여정,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회계분야 1 명(선우혜정), 경제분야 1 명(김형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 년 제 4 차 이사회에서 권희백 사내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그 사유를 공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이사회 규정 제 5 조)

-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내역 공시: 2022 년 3 월 23 일
-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효율적 이사회 소집/진행

구분	성명	직위
이사회 의장	권희백	대표이사
선임사외이사	노태식	사외이사

- 한편, 2022 년 5 월 13 일 노태식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사임함에 따라 2022 년 5 월 16 일의 제 8 차 (임시)이사회에서 김형태 사외이사가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구분	성명	직위
이사회 의장	권희백	대표이사
선임사외이사	김형태	사외이사

2) 구성원(2022 년말 기준 재임 이사)

(1) 이사 권희백 (이사회 의장)

- 직위: 대표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2017.03.24. ~ 제 62 기 정기주주총회일(2023.03.)
- 담당 업무

이사회	감사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경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ESG 위원회
의장	-	-	-	위원	위원장	-	-

－ 주요 경력

2017.07. ~ 현재 現)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2017.03. ~ 2017.06. 한화투자증권 경영관리 총괄
 2015.08. ~ 2017.02.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장
 2012.05. ~ 2015.07. 한화투자증권 기획관리담당
 2011.07. ~ 2012.05. 한화투자증권 기획관리본부장
 2011.02. ~ 2011.07. 한화투자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제 56 기 정기주주총회('17.03.)에서 사내이사로 최초 선임 후 제 58 기 정기주주총회('19.03.), 제 60 기 정기주주총회('21.03.)에서 재선임되었으며 그 임기는 제 62 기 정기주주총회일('23.03.)까지 입니다.

(2) 이사 김형태 (선임사외이사)

- － 직위: 사외이사
-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2020.03.24. ~ 제 62 기 정기주주총회일(2023.03.)
- － 담당 업무

이사회	감사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경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위원장	－

－ 주요 경력

2018.01. ~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
 2018.03. ~ 2019.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2014.08. ~ 2016.08. 미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2008.04. ~ 2014.04.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제 59 기 정기주주총회('20.03.)에서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22.03.)에서 1 년 재선임되어 그 임기는 제 62 기 정기주주총회일('23.03.)까지 입니다.

(3) 이사 선우해정

- 직위: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2021.03.24. ~ 제 62 기 정기주주총회일(2023.03.)
- 담당 업무

이사회	감사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경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장	위원장	-	-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2021.03.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학과장
 2020.03.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부교수
 2014.09. ~ 2020.02. 한국방송통신대 융합금융학부 조교수
 2003.07. ~ 2006.08. 美 Wm.Wrigley Jr. Company 내부감사인

제 60 기 정기주주총회('21.03.)에서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그 임기는 제 62 기 주주총회일('23.03.)까지 입니다.

(4) 이사 문여정

- 직위: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2022.03.23. ~ 제 63 기 정기주주총회일(2024.03.)
- 담당 업무

이사회	감사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경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	위원	-	위원장	-	위원	위원장

- 주요 경력

2021.09. ~ 현재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겸직교수
 2019.08. ~ 현재 오름테라퓨틱 기타비상무이사
 2019.02. ~ 현재 IMM 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
 2018.11. ~ 2021.04.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2016.03. ~ 2018.12. 인터베스트 투자본부 이사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22.03.)에서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그 임기는 제 63 기 주주총회일('24.03.)까지 입니다.

(5) 이사 한종석

- 직위: 사내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2018.03.28. ~ 제 63 기 정기주주총회일(2024.03.)
- 담당 업무

이사회	감사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경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	-	위원	-	위원	-	위원

- 주요 경력

2022.11. ~ 현재	한화투자증권 WM 본부장
2020.12. ~ 2022.10.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장
2016.03. ~ 2020.11.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
2011.03. ~ 2016.02.	한화케미칼 인사기획팀
2009.02. ~ 2011.02.	한화투자증권 기업금융팀

제 57 기 정기주주총회('18.03.)에서 사내이사로 최초 선임 후 제 59 기 정기주주총회('20.03.),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22.03.)에서 재선임 되었으며 그 임기는 제 63 기 정기주주총회일('24.03.)까지 입니다.

(6) 이사 김민수

- 직위: 사내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2021.03.24. ~ 제 62 기 정기주주총회일(2023.03.)
- 담당 업무

이사회	감사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경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	-	-	-	위원	-	-

- 주요 경력

2022.11. ~ 현재	한화투자증권 임원실
2020.11. ~ 2022.10.	한화투자증권 WM 본부장
2019.12. ~ 2020.11.	한화투자증권 채널전략실장
2018.12. ~ 2019.11.	한화투자증권 강북권역장
2017.01. ~ 2018.11.	한화투자증권 강남권역장
2016.04. ~ 2016.12.	한화투자증권 경기권역장
2014.01. ~ 2016.01.	한화투자증권 강남지점장

제 60 기 정기주주총회('21.03.24.)에서 사내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그 임기는 제 62 기 정기주주총회일('23.03.)까지 입니다.

※ 특이사항: 김민수 사내이사 2022 년 12 월 31 일자 사임

3) 요약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담당 위원회
권희백	사내 이사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現) • 한화투자증권 경영관리총괄 •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장	'17.03. 24.	제 62 기 정기주총일	위험관리 경영
김형태	사외 이사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내부거래위원장	•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現) • 미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20.03. 24.	제 62 기 정기주총일	임원후보추천 위험관리 보수 감사 내부거래
선우 혜정	사외 이사	임원후보추천 위원장 보수위원장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학과장(現)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부교수(現)	'21.03. 24.	제 62 기 정기주총일	임원후보추천 보수 감사 내부거래 ESG
문여정	사외 이사	위험관리위원장 ESG 위원장	• IMM 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現) •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겸직교수(現) •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22.03. 23.	제 63 기 정기주총일	임원후보추천 위험관리 내부거래 ESG
한종석	사내 이사		• 한화투자증권 WM 본부장(現) •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 • 한화케미칼 인사기획팀 상무보	'18.03. 28.	제 63 기 정기주총일	보수 경영 ESG
김민수	사내 이사		• 한화투자증권 WM 본부장 • 한화투자증권 채널전략실장 • 한화투자증권 강남권역장	'21.03. 24.	제 62 기 정기주총일	경영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2년에는 총 15 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분기별 1 회 총 4 회, 임시이사회 총 11 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95%입니다.

2022년도 이사회는 총 36 건의 의안을 가결하고 총 21 건의 보고를 받았으며, 이사회 교육은 총 5 회 진행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1) 제 1 차 (정기)이사회: 2022.02.04. (09:3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1.28.]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노태식	김원용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제 1 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1 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점검보고서	특이의견 없음								
다. 2021 년 위험관리 종합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임원보수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 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2 년 사업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 61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환매 연기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정산부 가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2021 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결과 주요정책/제도, 실/사업부 단위 주요 보고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나. 2021 년 당사에서 제조 또는 판매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점검 주요내용에 대한 이사회 보고
- 다. 2021 년말 자본적정성 지표, 주요 포지션, 위험액, 운용자산, 자금 한도 등의 내용과 2021 년 위험관리위원회 개최사항 종합보고

[의결]

- 가. 증권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임원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기본보수 지급기준을 '기본급+조정급'으로 변경하여 '임원보수규정'개정
- 나. 직장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공간을 구현하고자 2021 년 직장내 수행 활동 보고 및 2022 년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승인
- 다. 외부환경 요인을 감안한 당사의 2022 년 순영업수익, 세전이익 등의 계획 승인
- 라. 제 61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설명 및 승인
- 마. 환매 연기 사모펀드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후정산부 가지급 방안을 승인

(2) 제 2 차 (임시)이사회: 2022.02.22. (09:4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2.18.]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노태식	김원용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이사회내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토스뱅크 유상증자 참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이사회내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의결]

가. 토스뱅크 지분을 10%로 300 억원 유상증자 참여

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3) 제 3 차 (임시)이사회: 2022.03.03. (09:5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2.28.]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노태식	김원용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61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1 년 내부통제 활동 및 2022 년 내부통제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1 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자체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라. 제 61 기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특이의견 없음							
마. 2021 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제출	특이의견 없음							
바. 2021 년 자금세탁방지업무 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제 61 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	특이의견 없음							
아. 2021 년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주요주주와 회사간의 거래 사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정관 일부 변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61 기 현금배당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 61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재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4 항~제 6 항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 수행, 당기 중 단순 미비점, 유의적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 없음

-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2021 년 내부통제 활동 및 2022 년 내부통제 활동 계획 보고
- 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 라.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 점검 결과 당기 중 발견된 단순 미비점, 유의적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은 없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저조치함
- 마.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의 내부통제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기반으로 8 개 부문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수준을 평가, 종합등급은 2020 년에 이어 2021 년도 ‘보통’
- 바. 금융정보분석원의 ‘AML/CFT 관련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 처리 기준’의 운영위험 지표를 바탕으로 회사의 AML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평가 수행, 종합평가 전년에 이어 2021 년도 ‘적정’
- 사. 감사위원회가 당사 회계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및 동 부속 명세서를 검토한 내용 등을 보고
- 아. 종합감사 22 회, 특별감사 20 회를 실시 등 감사 세부내용 보고

[의결]

- 가. 주요주주인 한화자산운용과 상표권 거래(5,738,000 원) 승인
- 나. 정관상 『상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20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시 결의요건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성평등 규정 근거 반영
- 다. 배당성향 31% 수준인 보통주 200 원, 우선주 250 원 배당을 실시
- 라. 현금배당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 승인
- 마.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 부의안건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승인

(4) 제 4 차 (임시)이사회: 2022.03.23. (11: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3.18.]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노태식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김형태 사외이사 불참 사유: 3/23~25 부친 응급 입원 및 수술(제 5 차 이사회 불참 사유 동일)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 가. 효율적인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진행을 이유로 권희백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금융전문가이면서 다년간의 사외이사 경험을 보유한 노태식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
- 나. 이사회내 각 위원회 위원 선임

(5) 제 5 차 (임시)이사회: 2022.03.23. (11:35 개최)

[안건통지일: 2022.03.18.]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노태식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2021 년 금액변경 및 2022 년 예상금액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 가. '21 년 매출액 확정에 따른 '21 년 최종 브랜드 라이선스 사용료 확정 및 '22 년 브랜드 라이선스 예상 사용료 보고

(6) 제 6 차 (임시)이사회: 2022.04.20. (10: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4.15.]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노태식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베트남 현지법인 2 대주주 잔여지분 인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 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4 천만 USD 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 추진
(기존 대출 연장 2 천만 USD, 신규 대출 진행 2 천만 USD)
나. 베트남 현지법인 2 대주주 잔여지분 콜옵션 만기 도래로 원활한 경영을 위해 잔여지분 인수 추진

(7) 제 7 차 (정기)이사회: 2022.05.13. (13:2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5.10.]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노태식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1 분기 경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 김형태 사외이사 불참 사유: 부산 출장(5/13, 금)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2022 년 1 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상세 보고

(8) 제 8 차 (임시)이사회: 2022.05.16. (10:00 개최)

[안건통지일: 생략]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긴급 이사회 개최 건으로 이사 전원의 동의를 구해 소집절차 생략 (관련 규정: 이사회 규정 제 6 조 제 4 항)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 가. 노태식 사외이사의 사임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재선출. 다년간 사외이사 경험을 보유한 김형태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
나. 노태식 사외이사의 사임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을 재선임

(9) 제 9 차 (임시)이사회: 2022.06.27. (10: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6.24.]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ESG 경영 전략/정책 및 1 분기 추진현황	특이의견 없음						
나. 2021 년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결과	특이의견 없음						
다. 2021 년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평가 결과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계열사 출자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토스뱅크 유상증자 참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환매 연기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정산부 가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2022 년 ESG 경영 추진 전략 및 체계, 전사 ESG 경영 계획, ESG 분야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2022 년 1 분기 ESG 추진 현황을 보고
- 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 10 조에 따라 대표금융회사(한화생명)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 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
- 다. 대표금융회사(한화생명)의 평가·점검 후 소속금융회사간 협의(5/24, 2 분기 위험관리협의회),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6/3, 2 분기 정기 이사회)을 통해 확정된 평가결과를 보고

[의결]

- 가. 탄소중립 ESG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에 주로 투자하고자 조합을 결성. 계열회사 중 한화솔루션(100 억원), 한화임팩트(100 억원), 한화에너지(50 억원), 한화건설(50 억원) 출자
- 나. 토스뱅크 지분을 10%로 100 억원 유상증자 참여
- 다. 환매 연기 사모펀드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후정산부 가지급 방안을 승인

(10) 제 10 차 (임시)이사회: 2022.07.27.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7.22.]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토스뱅크 유상증자 참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채발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 가. 토스뱅크 지분을 10%로 100 억원 유상증자 참여
- 나. 3 년 만기 회사채 2,200 억원의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 필요로 3,000 억원 이내에서 발행금액 결정 승인

(11) 제 11 차 (정기)이사회: 2022.08.12. (11: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8.09.]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상반기 경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환매 연기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정산부 가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2022 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한 상세 보고

[의결]

가. 환매 연기 사모펀드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후정산부 가지급 방안을 승인

(12) 제 12 차 (임시)이사회: 2022.08.29. (10:3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8.26.]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토스뱅크 유상증자 참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토스뱅크 지분율 10%로 300 억원 유상증자 참여

(13) 제 13 차 (임시)이사회: 2022.09.19.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9.16.]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사업 추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추진을 위한 이사회 승인

(14) 제 14 차 (정기)이사회: 2022.11.14. (15: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11.11.]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ESG 중대성 평가결과에 기반한 주요 과제 추진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2 년 3 분기 경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발행예정한도 및 일괄신고서 제출 승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준법감시인 선임(연임)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기업어음(CP) 발행한도 증액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김민수 사내이사 불참 사유: 11/14 경남 점포 출장으로 인한 불참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ESG 중대성 및 ESG 중대 이슈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와 향후 계획을 보고

나. 2022 년 3 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상세 보고

[의결]

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 시마다 필요한 이사회 개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예정한도를 사전에 승인 받고 일괄신고서 제도를 활용

나. 現 준법감시인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연임을 승인

다.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1.5 조원으로 증액 승인

(15) 제 15 차 (임시)이사회: 2022.12.27. (10:10 개최)

[안건통지일: 2022.12.23.]

항 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김형태	선우 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회계관리자 승계 계획 및 후보군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환매 연기 사모신탁상품에 대한 사적 화해 추진(안)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통제기준 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주주와 회사간의 거래 사전 포괄승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규정 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및 후보군 관리 보고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김민수 사내이사 불참 사유: 12/26(월)~12/30(금) 국내 지방 점포 순시로 인한 불참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
-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의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회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자의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

[의결]

- 가. 환매 연기 사모신탁상품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후정산부 가지급 방안을 승인
- 나. 금융위원회가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 비중의 단계적 축소 시기를 3 개월 유예함으로써,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여전채 편입한도 유예 내용을 반영
- 다. 당사 주요주주인 한화자산운용과의 증권/파생상품 매매 및 중개, 수익증권 판매를 특정시점에 모든 거래 사항을 확정하기 어렵고 개별 건 모두를 이사회 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상관행상 정형화되고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는 양사간 반복되는 동종거래에 대해 사전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 포괄승인
- 라. 법령 제·개정 사항을 본 개정안에 포함하여 이사회 규정의 정합성을 제고
- 마. 지배구조법 제 8 조에 의거 주요업무(전략기획, 재무관리) 집행책임자를 신규 선임
- 바. 지배구조법 제 15 조에 의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후보군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승인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9 조)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 회 이상 이사회 운영에 대한 사외이사 전원의 설문 평가를 통해 전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서(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 ② 직무평가(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
- ③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 구성(적정 인원수, 사외이사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 운영(개최 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역할과 책임(이사의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간 의사소통,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평가점수는 직무평가서 40 점, 직무평가(정량) 30 점,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정성) 30 점으로 총 100 점 만점으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항목별 차등배점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평가 절차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안)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직무 평가서는 크게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항목으로 구분되는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을 조사한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직무평가서(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사외이사 직무평가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40 점	40 점 만점

- ① 전문성: 금융업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이해 정도, 전문성 향상 위한 정보수집
- ② 직무 공정성: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 정도, 주주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③ 윤리성/책임성: 기업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이해 및 의사결정 반영 정도, 이해상충행위 금지, 비밀 유지 등 기본윤리 준수 정도
- ④ 충실성: 사외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 확보에 충분한 노력 정도 및 개인 일정 관리 정도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정량평가, 회사작성)

구분		참여율	평가점수 평균	비고
정량평가	참여횟수/ 개최횟수	100%	28.7 점	30 점 만점

※ 참여율: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횟수/개최횟수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정성평가, 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이사회 등' 평가 (정성평가)	구성, 운영, 역할과 책임	30 점	30 점 만점

- ① 구성: 적정 인원수,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수준
- ② 운영: 개최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③ 역할과 책임: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원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한화투자증권 이사회 평가는 정성평가 점수 70 점(70 점 만점 기준), 정량평가 점수 28.7 점(30 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총점 98.7 점으로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한화투자증권은 원활한 이사회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2022 년 제 4 차 이사회에서 권희백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사외이사가 효율적인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진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2022 년 제 4 차 이사회에서 노태식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외이사 중 연장자로서 오랜 연륜이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 13 조)

한편, 2022 년 5 월 13 일에 노태식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사임함에 따라 2022 년 제 8 차 이사회에서 김형태 사외이사가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한화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 4 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3 명)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물색하여 임원후보군을 관리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임원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리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에 맞는 임원후보군을 검증·관리하며,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관련 규정: 정관 제 31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21 조)

나. 구성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9 년 2 월부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2022 년 3 월 23 일 기존 위원장이었던 김원용 사외이사의 퇴임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전반에 대한 조정을 통해 노태식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022 년 5 월 13 일 위원장인 노태식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사임함에 따라 선우혜정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2022 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원용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제 8 차 이사회〉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노태식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노태식 사외이사: 2022.5.13. 字 사임

〈제 8 차 이사회 이후〉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5.16.	제 62 기 정기주총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5.16.	제 62 기 정기주총일
문여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5.16.	제 62 기 정기주총일

다. 선임기준(자격요건과 추천 절차)

1) 후보 자격요건

한화투자증권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과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관련 내규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

2) 후보 추천 절차

한화투자증권은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사외이사 후보군 평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하여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금융, 경영, 재무, 리스크관리, 회계, 법률, 디지털/IT, ESG/소비자보호, 정보보호 등으로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직원, 외부 전문기관, 주주 등으로부터 예비 후보를 추천 받은 후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심의하여 후보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을 위해 다양한 분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상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후보자 추천이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선임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한화투자증권은 2022 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1 회 개최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3 건이며, 3 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2 년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원용, 노태식, 김형태 사외이사의 임기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노태식, 김형태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문여정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후보추천 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1)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2.02.22.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2.18.]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원용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1-1 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김형태 재선임)	찬성	제한 ^{주1}	찬성	가결
1-2 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문여정 신규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1 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노태식 재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1 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김형태 신규 선임)	찬성	제한 ^{주1}	찬성	가결

주1) 본인 의결권 제한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 1 호.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 후보 2 명 추천 의결
- 2 호.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을 위한 후보 1 명 추천 의결
- 3 호.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1 명 추천 의결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투자증권은 매년 1 회 이상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서(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 ② 직무평가(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
- ③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 구성(적정 인원수, 사외이사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 운영(개최 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역할과 책임(이사의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간 의사소통,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평가점수는 직무평가서 40 점, 직무평가(정량) 30 점,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정성) 30 점으로 총 100 점 만점으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항목별 차등배점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평가 절차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안)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직무 평가서는 크게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항목으로 구분되는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을 조사한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직무평가서(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사외이사 직무평가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40 점	40 점 만점

- ① 전문성: 금융업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이해 정도, 전문성 향상 위한 정보수집
- ② 직무 공정성: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 정도, 주주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③ 윤리성/책임성: 기업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이해 및 의사결정 반영 정도, 이해상충행위 금지, 비밀 유지 등 기본윤리 준수 정도
- ④ 충실성: 사외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 확보에 충분한 노력 정도 및 개인 일정 관리 정도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정량평가, 회사작성)

구분		참여율	평가점수 평균	비고
정량평가	참여횟수/ 개최횟수	100%	30 점	30 점 만점

※ 참여율: 사외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여횟수/개최횟수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정성평가, 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구성, 운영, 역할과 책임	30 점	30 점 만점

- ① 구성: 적정 인원수,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수준
- ② 운영: 개최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③ 역할과 책임: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원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는 정성평가 점수 70 점(70 점 만점 기준), 정량평가 점수 30 점(30 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총점 100 점으로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 사항

(1) 후보자 성명 및 출생연도 등

구분	성명	출생연도	출신학교
1	노태식	1954년	대전상업고 성균관대 경제학
2	김형태	1961년	관악고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경영학(碩) 서울대 경영학(博)
3	문여정	1979년	대전과학고 연세대 의학 연세대 의학(碩) 연세대 의과학(博)

(2) 후보자 경력 사항

성명	경력구분	경력 상세 내용
노태식	일반경력	'06.04. ~ '08.06. (前) 금융감독원 은행 및 비은행담당 부원장보 '09.03. ~ '12.02. (前) 전국은행연합회 상근부회장 '12.05. ~ '21.12.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사외이사경력	'20.03. ~ 현재 (現) 대한해운 사외이사 '18.03. ~ 현재 (現)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김형태	일반경력	'08.04. ~ '14.04. (前)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14.08. ~ '16.08. (前) 美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18.03. ~ '19.02. (前)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18.01. ~ 현재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사외이사경력	'16.05. ~ '19.05. (前) KB증권 사외이사 '19.03. ~ 현재 (現)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 '20.03. ~ 현재 (現)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문여정	일반경력	'11.03. ~ '14.02. (前)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연구조교 '14.03. ~ '16.02. (前) 세브란스 체크업 계약교수 '16.03. ~ '18.12. (前) 인터베스트 투자본부 이사 '18.11. ~ '21.04. (前)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19.02. ~ 현재 (現) IMM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 '19.08. ~ 현재 (現) 오름테라퓨틱 기타비상무이사 '21.09. ~ 현재 (現)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겸직 교수
	사외이사경력	없음

※ 임원후보추천 당시 경력 기준

나) 후보 제안자 및 추천사유

후보자 성명	제안자	추천사유	후보자와의 관계
노태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금융전문가	없음
김형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금융/경제전문가	없음
문여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바이오/VC 전문가	없음

(1) 사외이사 추천사유

ㄱ. 후보자: 노태식

지난 4년간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30년 이상 금융 관련 업무경력을 통해 금융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경영전반에 걸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역의 역할 수행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됩니다.

ㄴ. 후보자: 김형태

지난 2년간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사(증권, 보험 등) 사외이사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당사와 증권업, 나아가 금융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 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ㄷ. 후보자: 문여정

의학박사 출신 1호 벤처캐피탈리스트로서 교수 및 투자사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회사의 글로벌 진출 및 사업 확장 관련 전문적 조언이 기대됩니다. 여성 사외이사이자 후보자가 보유한 의학/바이오, VC 관련 전문성 및 경험은 이사회역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효율적 경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감사위원 추천사유

ㄱ. 후보자: 노태식

금융전문가로서 지난 4년간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현재 감사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임기 동안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성실성과 전문 역량을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충실히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ㄴ. 후보자: 김형태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서 다양한 경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 년간 당사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학습으로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충실히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지배구조법 제 19 조에 의거,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야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후보를 추천하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 중인 임원(노태식, 김원용)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형태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이 될 후보로 추천하였고, 재선임되는 노태식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서 분리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의 자격충족 여부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용하였고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 평가

- 후보자 노태식, 김형태, 문여정은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물색하여 관리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후보자 노태식, 김형태, 문여정은 당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항목별로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가) 전문성

ㄱ. 후보자: 노태식

노태식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를 마치고, 금융감독원 은행 및 비은행담당 부원장보, 전국은행연합회 상근부회장,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고문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30 년 이상 금융 관련 경력을 통한 금융 전반에 걸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당사가 당면할 과제에 대한 수준 높은 접근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ㄴ. 후보자: 김형태

김형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美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금융사 사외이사 수행 경험을 토대로 경영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경제/금융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ㄷ. 후보자: 문여정

문여정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의학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세브란스 체크업 임상 조교수, 인터베스트 투자본부 상무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IMM 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겸직 교수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의학박사이자 벤처투자자로서 교수 및 투자사에서의 전문성과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 정부기관 대외활동 등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당사의 경영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바이오/VC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성

ㄱ. 후보자: 노태식

노태식 후보자는 2018 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당사(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포함)와의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ㄴ. 후보자: 김형태

김형태 후보자는 2020 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ㄷ. 후보자: 문여정

문여정 후보자는 당사(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포함)와의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ㄱ. 후보자: 노태식

노태식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은행 및 비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한 인물로 다년간의 금융당국(규제기관) 등 경험을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지배구조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높은 이해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성 및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ㄴ. 후보자: 김형태

김형태 후보자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및 美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등 고위 임원 및 교직자 경험을 통해 조직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적 판단력과 높은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윤리성 및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ㄷ. 후보자: 문여정

문여정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연구조교, 세브란스 체크업 계약교수,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겸직 교수 등 교직자 경험과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 정부 정책 업무 수행 이력을 통해 윤리적 판단력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후보자는 윤리성 및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ㄱ. 후보자: 노태식

2021년 개최된 총 15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사전 의안 검토 등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ㄴ. 후보자: 김형태

2021년 개최된 총 15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로 근무 중이나 그외 겸직사항이 없으므로 정기 이사회, 사외이사 교육, 의안 사전검토 등 다수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ㄷ. 후보자: 문여정

투자사 임원, 교수 등 다수의 겸직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성실성과 책임감으로 이사회, 사외이사 교육, 의안 사전검토 등 다수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ㄱ. 후보자: 노태식, 김형태, 문여정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6 조 제 1 항, 제 3 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서 제출). 또한 후보자들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1) 2022년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과

ㄱ. 후보자: 노태식

노태식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을 위해 2022년 2월 22일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건은 각각 출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ㄴ. 후보자: 김형태

김형태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을 위해 2022 년 2 월 22 일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건은 각각 출석위원 2 명 전원(본인 의결권 제한)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ㄷ. 후보자: 문여정

문여정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위해 2022 년 2 월 22 일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건은 출석위원 3 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마)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2 년 3 월 개최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3 명이며, 이 중 2 명이 재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출석률	평가 여부
노태식	2018.03. ~ 2022.03.	연임	100%	시행
김형태	2020.03. ~ 2022.03.	연임	100%	시행
김원용	2018.03. ~ 2022.03.	퇴임	100%	-

※ 이사회 출석률: 2021년 연간 기준

바)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사외이사 노태식, 김형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재임기간 중 사외이사 평가결과도 우수하여 사외이사 후보로서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회사 내·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2022 년 12 월 27 일 개최된 제 15 차 이사회에 총 3 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보고하였습니다. 후보군은 금융전문가 1 명, 회계전문가 1 명, 정보보호전문가 1 명으로 구성되었고 지원부서 및 임직원으로부터 추천되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 보고 일자: 2022 년 12 월 27 일 제 15 차 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추천경로	비율
금융	1	지원부서 및 임직원	33.3%
회계	1	지원부서 및 임직원	33.3%
정보보호	1	지원부서 및 임직원	33.3%
합계	3	지원부서 및 임직원	100%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 부서명 : 인재관리팀
- － 담당자 : 총괄(부서장) 1 명, 실무자 1 명
- － 보고내용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22. 12. 27.	제 15 차 이사회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 사외이사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최종학력	구분
노태식	54.01.08	금융감독원 은행 및 비은행담당 부원장보 전국은행연합회 상근부회장 (現)대한해운 사외이사 (現)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고문	성균관대 경제학	재선임

2. 사외이사 평가내역

연도	평가내역				
2018년	매우 우수	이사회동점평가 (30점만점)	직무평가(정성) (40점만점)	직무평가(정량) (30점만점)	계
		30	39	30	99
2019년	매우 우수	이사회동점평가 (30점만점)	직무평가(정성) (40점만점)	직무평가(정량) (30점만점)	계
		29	38	30	97
2020년	매우 우수	이사회동점평가 (30점만점)	직무평가(정성) (40점만점)	직무평가(정량) (30점만점)	계
		29.7	39	30	98.7
2021년	매우 우수	이사회동점평가 (30점만점)	직무평가(정성) (40점만점)	직무평가(정량) (30점만점)	계
		30	40	30	100

주) 이사회동: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내역

구분	개회/참석	
이사회	개회	50회
	참석	50회
이사회내 위원회	개회	58회
	참석	58회
참석율		100%

※ 재임기간(18~21년) 중 개회 및 참석횟수

상기 노태식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재임기간 중 사외이사 평가결과도 우수하였는바 사외이사 후보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02.22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김 원 용 (서명 또는 인)

김 원 용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 사외이사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최종학력	구분
김형태	61.07.07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미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現)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 (現)신한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재선임

2. 사외이사 평가내역

연도	평가내역			
2020년	매우 우수	이사회등평가 (30점만점)	직무평가(정성) (40점만점)	직무평가(정량) (30점만점)
		30	40	30
2021년	매우 우수	이사회등평가 (30점만점)	직무평가(정성) (40점만점)	직무평가(정량) (30점만점)
		30	40	30

주) 이사회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내역

구분		개최/참석
이사회	개최	24회
	참석	24회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20회
	참석	20회
참석율		100%

※ 재임기간(20~21년) 중 개최 및 참석횟수

상기 김형태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재임기간 중 사외이사 평가결과도 우수하였는바 사외이사 후보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02.22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김 원 용 (서명 또는 인)

김 원 용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2022 년말 재임 사외이사 기준, 참석횟수는 해당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시 기준)

가) 사외이사 김형태

김형태 사외이사는 2022 년 중 개최된 이사회 15 회 중 12 회 참석하였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 보수위원회 2 회, 위험관리위원회 7 회, 감사위원회 6 회 모두 참석, 내부거래위원회는 2 회 중 1 회 참석하였습니다.

경제/금융 전문가로서 축적된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사항에 대하여 경제흐름의 변화 및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남아 지역 국가에 대한 Risk Factor 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제시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를 겸직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기반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에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형태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2 년 중 총 126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김형태 사외이사는 선임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게 추가 검토 후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스뱅크 유상증자 리스크 요인 분석 보고 (요청일: 2022.02.22.)
- 베트남 거시경제 전망 및 신용공여 사업에 대한 보고 (요청일: 2022.04.20.)
- ※ 위의 요청사항에 대한 경영진 보고: 제 9 차 임시이사회 (2022.06.27.)

나) 사외이사 선우혜정

선우혜정 사외이사는 2022 년 중 개최된 이사회 15 회 모두 참석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 또한 감사위원회 7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 보수위원회 2 회, 내부거래위원회 1 회, ESG 위원회 3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회계 전문가로서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정책 등을 점검하면서 적시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회사의 불확실성 상황 하에 당사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도록 조언하면서 회사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우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ESG 위원회를 겸직하면서 보수위원회에서는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여 회사의 재무상황과 보상정책 간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선우혜정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2 년 중 총 143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문여정

문여정 사외이사는 2022 년 3 월 사외이사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 12 회 모두 참석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 7 회, 내부거래위원회 2 회, ESG 위원회 3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문여정 사외이사는 국내 최초 의사출신 벤처캐피탈리스트로 금융업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식견을 쌓았으며, 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 제기 및 분석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ESG 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겸직하면서 위험위원회에서는 관찰대상 익스포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활동을 수행하며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관리에 기여하였으며, ESG 위원회에서는 글로벌 ESG 동향에 대한 의견과 당사 ESG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당사 ESG 경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여정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2 년 중 총 80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요약

(2022년 말 재임이사 기준)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시간
			감사위		임추위		보수위		위험관리		내부거래		ESG		
	개 최	참 여	개 최	참 여	개 최	참 여	개 최	참 여	개 최	참 여	개 최	참 여	개 최	참 여	실적
김형태	15	12	6	6	1	1	2	2	7	7	2	1	-	-	126
선우혜정	15	15	7	7	1	1	2	2	-	-	1	1	3	3	143
문여정	12	12	-	-	-	-	-	-	7	7	2	2	3	3	80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구 분	내 용
가입사	한화손해보험(주)
보험료	193,433,000 원
보험금	10,000,000,000 원
계약조건	계약기간(2022.07.10. ~ 2023.07.10.)간 회사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 3 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함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회사 및 금융환경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성명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	-----	------	-----

1. 교육·연수 실시내역

1) ESG 채권 발행 안내서	- 일시: 2022년 2월 4일 - 내용: ESG 채권의 발행 구조 및 현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2) 국내 배출권 시장 개요와 운용 전략	- 일시: 2022년 2월 22일 - 내용: 국내 배출권 시장 개요·동향, 운용 전략·위험관리 방안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국내 ETF 시장동향, 규제 속 새로운 도전	- 일시: 2022년 4월 20일 - 내용: ETP 규제 소개 및 대응 방안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4) 내부회계관리제도	- 일시: 2022년 11월 14일 -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명 및 현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5) 사외이사 법상 자격요건 및 공시 관련 교육	- 일시: 2022년 11월 14일 - 내용: 사외이사의 법적 자격요건과 공시에 관련한 교육 진행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분)	100	100	100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형태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6 조 제 1 항
- 평가
 - 김형태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형태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美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사외이사의 경력과 업적을 검토해 본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경제/금융전문가의 직무전문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직무전문성	충족	경제/금융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無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적 문제소지 無
라. 충실성	충족	참석률 높음

2) 사외이사 선우혜정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6 조 제 1 항
- 평가
 - 선우혜정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선우혜정 사외이사는 美 미시간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박사를 마치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학과장, 同 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우혜정 사외이사의 경력과 업적을 검토해 본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재무/회계전문가의 직무전문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직무전문성	충족	재무/회계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無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적 문제소지 無
라. 충실성	충족	참석률 높음

3) 사외이사 문여정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6 조 제 1 항
- 평가
 - 문여정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문여정 사외이사는 연세대학교 의학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현재 IMM 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겸직 교수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여정 사외이사의 경력과 업적을 검토해 본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바이오/VC 전문가로서 직무전문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직무전문성	충족	바이오/VC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無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적 문제소지 無
라. 충실성	충족	참석률 높음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개요

당사는 사외이사 임기를 최초 선임 시 2 년 이내(2 년 이내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제한하고, 임기 만료 후 연임 시 그 기간은 1 년으로 제한하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 년간의 임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춰 역량의 자질 및 실적뿐만 아니라, 당사 이사회의 운영 효율성, 지배구조 적정성,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등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평가주체: 사외이사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결산기 종료 후 이사회의 이사와 이사회 지원조직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

- 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서(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 ② 직무평가(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
- ③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 구성(적정 인원수, 사외이사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 운영(개최 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역할과 책임(이사의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간 의사소통,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평가점수는 직무평가서 40 점, 직무평가 30 점,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평가 30 점으로 총 100 점 만점으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항목별 차등배점하고 있습니다.

- 평가절차

- ①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에게 평가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서 항목에 의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② 이사 본인의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을 평가하며, ③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운영,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사외이사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④ 지원부서는 직무평가(정량평가: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이 충실히 수 있도록 사외이사들의 위원회 겸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2 년도 내부평가 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30 점 만점)	직무평가 (40 점 만점)	직무평가(정량평가) (30 점 만점)	계
김형태	30	40	26	96
선우혜정	30	40	30	100
문여정	30	40	30	100
평균	30	40	28.7	98.7

※ 2022 년말 재임 사외이사 기준

3) 외부평가

향후 외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한화투자증권은 2022 년 5 월 8 차 이사회에서 김형태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김형태 선임사외이사는 지난 2 년간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사외이사 중 연장자이고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사(증권, 보험 등) 사외이사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당사와 증권업, 나아가 금융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 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내·외 이사들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이슈사항이 이사회에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임 사외이사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었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 사외이사 업무지원 조직(경영관리팀)은 사외이사의 업무집행 시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년말 현재 경영관리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팀장 1 명, 팀원 9 명으로 총 10 명입니다.

경영관리팀의 사외이사 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와 관련 내부거래위원회 및 경영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유지
- 이사회 및 이사의 평가에 관한 실무지원
- 이사 연수에 관한 실무지원
- 이사회의 지시사항 처리 및 기타 지원 업무

경영관리팀은 2022 년도 중 이사회 15 회, 감사위원회 7 회, 위험관리위원회 7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 보수위원회 2 회, 내부거래위원회 2 회, 경영위원회 9 회, ESG 위원회 3 회, 사외이사 연수 5 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사회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김원용

가) 재직기간

- 이사회 구성원 내역 참고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942 만원	
	기본금	1,937 만원	700 만원×2.8 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5 만원	단체상해보험 지원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 제공	-	

2) 사외이사 노태식

가) 재직기간

- 이사회 구성원 내역 참고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115 만원	
	기본금	3,103 만원	700 만원×4.43 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12 만원	단체상해보험 지원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 제공	-	

3) 사외이사 김형태

가) 재직기간

- 이사회 구성원 내역 참고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400 만원	
	기본금	8,400 만원	700 만원 × 12 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 제공	-	

4) 사외이사 선우혜정

가) 재직기간

- 이사회 구성원 내역 참고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495 만원	
	기본금	8,400 만원	700 만원 × 12 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95 만원	단체상해보험 지원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100 만원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00 만원	본인 지원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 제공	-	

5) 사외이사 문여정

가) 재직기간

- 이사회 구성원 내역 참고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487 만원	
	기본금	6,487 만원	700 만원×9.3 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 제공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김형태	'20.03. 24	제 62 기 정기주총일	34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03. ~) 위험관리위원회 (' 20.03. ~) 보수위원회 (' 21.03. ~) 감사위원회 (' 22.03. ~) 내부거래위원회 (' 20.03. ~)	선임사외이사 (' 22.05.~) 감사위원장 (' 22.05. ~) 내부거래위원장 (' 22.03. ~)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現)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선우혜정	'21.03.24.	제 62 기 정기주총일	22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1.03. ~) 보수위원회 (' 21.03. ~) 감사위원회 (' 21.03. ~) 내부거래위원회 (' 22.05. ~) ESG 위원회 (' 22.03. ~) 임추위(' 21. 3. ~) 보수위(' 21. 3. ~) 감사위(' 21. 3. ~)	임원후보추천위원장 (' 22.05. ~) 보수위원장 (' 21.03.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학과장(現)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부교수(現)
문여정	'22.03.23.	제 63 기 정기주총일	10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2.05. ~) 위험관리위원회 (' 22.03. ~) 내부거래위원회 (' 22.03. ~) ESG 위원회 (' 22.03. ~)	위험관리위원장 (' 22.05. ~) ESG 위원장 (' 22.03. ~)	IMM 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現)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겸직 교수(現)
이창남 (퇴임)	'18.03.28.	제 59 기 정기주총일	24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8.03.~' 20.03.) 위험관리위원회 (' 18.03.~' 20.03.) 내부거래위원회 (' 19.03.~' 20.03.)	-	대양코리아 대표이사 한화 S&C 대표이사
김용재 (퇴임)	'16.03.18.	제 60 기 정기주총일	60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6.12.~' 21.03.) 내부거래위원회 (' 16.03.~' 21.03.) 감사위원회 (' 18.03.~' 21.03.)	-	민우세무법인 회장 충북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원용 (퇴임)	'18.03.28.	제 61 기 정기주총일	48 개월	임원후추천위원회 (' 19.03.~' 22.03.) 내부거래위원회 (' 21.03.~' 22.03.) 감사위원회 (' 18.03.~' 22.03.) ESG 위원회 (' 21.03.~' 22.03.)	-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이사 김앤장법률사무소 Senior Advisor
노태식 (사임)	'18.03.28.	'22.05.13. (중도사임)	50 개월	감사위원회 (' 18.03.~' 22.03.) 위험관리위원회 (' 18.03.~' 22.03.) 내부거래위원회 (' 21.03.~' 22.03.)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고문 금융감독원 은행 및 비은행담당 부원장보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 內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최고경영자의 자격, 최고경영자의 후보자 추천 절차,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등입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 규정은 이사회가 연 1 회 이상 그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45 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의거, 최고경영자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2022년 12월 27일 제 15차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 9명을 보고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후보군을 포함한 최종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종후보자가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하며, 후보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의 이사 선임 안건 부의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결의하고,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완료합니다.

2) 비상상황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며,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직무 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이사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내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지침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자격검증, 예비후보자 및 최종 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총 9 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당사 이사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인재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 년말 기준 최고경영자 후보군 총 7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후보자 3 명을 신규 추가하고, 1 명을 제외함으로써 2022 년말 기준 내부 9 명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군 평가 및 검증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2022 년 12 월 27 일 제 15 차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후보군 선정을 확정된 바 있습니다.

(1) 후보군 현황

- 보고일: 2022 년 12 월 27 일 제 15 차 이사회

구분		후보군수	백분율	기타
내부	내부	9 명	100%	-
외부	금융회사	-	-	-
	비금융회사	-	-	-
	공공기관	-	-	-
	기타	-	-	-
합계		9 명	100%	-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에 의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중입니다.

당사는 2022 년 12 월 27 일 개최된 제 15 차 이사회에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최고경영자 승계계획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 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44 조에 따라 인재관리팀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의 역할은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 검증 업무,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입니다. 또한 지원부서는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등 내역에 대해 매년 1 회 이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인재관리팀
- 담당자: 총괄(부서장) 1 명, 실무자 1 명
- 운영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22. 12. 27.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및 후보군 관리 보고	제 15 차 이사회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 인 이상이 포함된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2/3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1)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13 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감사보조조직은 2022 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및 사후 심의를 하였고, 필요 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위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상법 제 402 조·제 412 조, 지배구조법 제 20 조)

감사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 및 주요 내용의 변경, 예산의 전용 및 이월, 내규의 제정 및 변경 등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실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합산점수의 최고 득점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감사인은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 단위로 선임합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3 조,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 7 조 및 10 조)

2021 년 외부감사인 자율 선임 기간이 종료되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주기적 지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정유예' 됨에 따라 선정 절차에 따라 2021 년 12 월 8 일 개최된 제 7 차 감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을 2022 년 ~ 2024 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 및 선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하였습니다.

2022 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받고 2023 년부터 3 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 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독립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2022 년도 제 1 차(3 월), 제 3 차(5 월), 제 5 차(8 월), 제 6 차(11 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사항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2 년말 현재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업무는 없으나, 공인회계사법에서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비감사용역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지 않은 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업무수행계획서를 포함한 내용을 보고하고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사항 보고 시에 독립성과 관련하여 비감사용역 업무 유무를 포함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상근감사위원의 역할 및 권한 일부를 감사실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10 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사항,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등이 감사실장에게 위임되었으며, 감사실장은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16 조, 제 18 조)

감사실장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회사의 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2 년 감사계획을 2021 년 제 6 차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 12 조)

또한 2022 년 중에 실시(발생)한 감사실적 및 대외기관의 감사수검·결과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보고하였으며, 2022 년도 연간 감사결과는 2023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 (2023.02.28.)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감사실장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라. 감사보조조직 등' 항목 참고)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보조 조직인 감사실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대조·실사·입회·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실은 2022 년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23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재무상태표·연결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2023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에서 당사 2022 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통합감사 수행·종료단계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실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결과 등을 제출받아 2023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확인합니다.

감사위원회는 2023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에서 2022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한, 동 평가보고서는 이사회에 대면 보고합니다.

2022 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는 2023 년 2 월 28 일 개최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연 1 회 이상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 16 조)

감사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 및 소비자보호활동 점검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17 조, 제 18 조)

감사위원회는 2022 년도 제 1 차(3 월), 제 3 차(5 월), 제 5 차(8 월), 제 6 차(11 월)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부터 내부통제·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정책, 자문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민원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2.03.03.	감사위원회	2021 년 4 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2021 년 4 분기 소비자보호활동 결과 보고
2022.05.10.	감사위원회	2022 년 1 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2022 년 1 분기 소비자보호활동 결과 보고
2022.08.12.	감사위원회	2022 년 2 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2022 년 2 분기 소비자보호활동 결과 보고
2022.11.14.	감사위원회	2022 년 3 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2022 년 3 분기 소비자보호활동 결과 보고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정관 제 42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22 조, 감사위원회 규정 제 8 조·제 9 조)

2022 년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한 3 명의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2022 년 5 월 사외이사(감사위원장)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 하면서 사외이사 2 명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선우혜정 위원으로 총 1 명 입니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사임 사유로 위원회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방식을 통해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 년입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9 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6 조>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 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 9 조 제 17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 8 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구성원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노태식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김원용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2 기 정기주총일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제 3 차 감사위원회>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노태식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2 기 정기주총일

※ 노태식 사외이사 2022.05.13. 字 사임

<제 4 차 감사위원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2 기 정기주총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감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1 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감사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11 조, 제 12 조)

2022 년에는 총 7 회(정기회의 4 회, 임시회의 3 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결의사항 11 건, 보고사항 19 건 등 총 30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의 감사위원회 참석률은 100%입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도와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1) 제 1 차 (정기)감사위원회: 2022.03.03.(08: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2.28.]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태식	김원용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1 년 외부감사인인 통합감사 수행·종료단계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제 61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1 년 4 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1 년 4 분기 소비자보호활동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1 년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제 61 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1 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1 년 자금세탁방지업무 평가 결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 61 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외부감사인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 61 기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2021 년 외부감사 진행사항,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주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현황 등 보고
- 나. 2021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수행 절차, 평가 일정, 설계 및 운영평가 결과, 당기 미비점 개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다. 2021 년 4 분기 내부통제 정책, 자문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민원 등 내부통제활동 실적 보고
- 라. 2021 년 4 분기 소비자보호 정책, 자문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민원 등 소비자보호활동 실적 보고
- 마. 2021 년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외부기관 수검 및 조치 현황 등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의결]

- 가. 제 6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승인함
- 나. 2021 년 내부통제시스템 작동여부 등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승인함
- 다. 2021 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승인함
- 라. 제 61 기 정기 주주총회 부의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승인함
- 마. 제 61 기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승인함
- 바. 외부감사인인 인적 구성 및 전문성, 감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평가결과를 승인함
- 사. 제 61 기 내부감시장치 및 기능, 구성, 운영실적 등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승인함

(2) 제 2 차 (임시)감사위원회: 2022.03.29.(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3.18.]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태식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제한 ¹⁾	찬성	찬성	가결

1) 본인 의결권 제한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함

(3) 제 3 차 (정기)감사위원회: 2022.05.10.(14:2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5.06.]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태식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1 분기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제 62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2 년 1 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2 년 1 분기 소비자보호활동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2 년 1 분기 감사실적 및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2022 년 1 분기 검토 진행사항, 독립성 등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보고

나. 2022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일정계획, 변화관리, 교육계획, 통제활동 미비점 개선 계획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보고

다. 2022 년 1 분기 내부통제 정책, 자문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민원 등 내부통제활동 실적 보고

라. 2022 년 1 분기 소비자보호 정책, 자문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민원 등 소비자보호활동 실적 보고

마. 2022 년 1 분기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등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4) 제 4 차 (임시)감사위원회: 2022.05.16.(10:20 개최)

[안건통지일: 생략]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제한 ¹⁾	찬성	가결

※ 긴급 감사위원회 개최 건으로 위원 전원의 동의를 구해 소집절차 생략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11 조 제 4 항)

1) 본인 의결권 제한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함

(5) 제 5 차 (정기)감사위원회: 2022.08.12.(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8.09.]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2 분기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2 년 2 분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2 년 2 분기 소비자보호활동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2 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2022 년 반기 검토 진행사항, 2022 년 감사 진행사항 등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보고
- 나. 2022 년 2 분기 내부통제 정책, 자문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내부통제활동 실적 보고
- 다. 2022 년 2 분기 소비자보호 정책, 자문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민원 등 소비자보호활동 실적 보고
- 라. 2022 년 상반기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등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6) 제 6 차 (정기)감사위원회: 2022.11.14.(15:45 개최)

[안건통지일: 2022.11.11.]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3 분기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감사인 지정 현황 및 진행 절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2 년 3 분기 내부통제활동 및 2023 년 내부통제활동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2 년 3 분기 소비자보호활동 및 2023 년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2 년 3 분기 감사실적 및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23 년 감사계획 의결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2022 년 3 분기 검토 진행사항, 2022 년 감사 진행사항 등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보고
- 나. 감사인 지정 현황 보고
- 다. 2022 년 3 분기 내부통제 정책, 자문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내부통제활동 실적 및 2023 년 내부통제계획 보고
- 라. 2022 년 3 분기 소비자보호 정책, 자문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민원 등 소비자보호활동 실적 및 2023 년 소비자보호활동계획 보고
- 마. 2022 년 3 분기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등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의결]

- 가. 2023 년 감사 중점 추진사항 및 감사실시 계획을 승인함

(7) 제 7 차 (임시)감사위원회: 2022.12.27.(10: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12.23.]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형태	선우혜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승인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지정 감사인 재지정 요청을 승인함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투자증권은 매년 1 회 이상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감사위원회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서(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 ② 직무평가(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
- ③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 구성(적정 인원수, 사외이사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 운영(개최 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역할과 책임(이사의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간 의사소통,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평가점수는 직무평가서 40 점, 직무평가(정량) 30 점,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정성) 30 점으로 총 100 점 만점으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항목별 차등배점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평가 절차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안)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직무 평가서는 크게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항목으로 구분되는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을 조사한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직무평가서(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사외이사 직무평가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40 점	40 점 만점

- ① 전문성: 금융업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이해 정도, 전문성 향상 위한 정보수집
- ② 직무 공정성: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 정도, 주주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③ 윤리성/책임성: 기업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이해 및 의사결정 반영 정도, 이해상충행위 금지, 비밀 유지 등 기본윤리 준수 정도
- ④ 충실성: 사외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 확보에 충분한 노력 정도 및 개인 일정 관리 정도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정량평가, 회사작성)

구분		참여율	평가점수 평균	비고
정량평가	참여횟수/ 개최횟수	100%	30 점	30 점 만점

※ 참여율: 사외이사의 감사위원회 참여횟수/개최횟수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정성평가, 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감사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구성, 운영, 역할과 책임	30 점	30 점 만점

- ① 구성: 적정 인원수,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수준
- ② 운영: 개최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③ 역할과 책임: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원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한화투자증권 감사위원회 평가는 정성평가 점수 70 점(70 점 만점 기준), 정량평가 점수 30 점(30 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총점 100 점으로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실을 두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하거나, 외부전문인력을 계약직 풀타임 감사인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14 조·제 20 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 9 조)

2022 년 12 월말 현재 감사보조조직인 감사실은 총 10 명(감사실장 1 명, 감사직무 8 명, 지원직무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상근감사위원의 역할 및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감사보조조직 운영을 주관하고, 감사실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보조조직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2.01.10.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02.10.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03.03.	감사위원회	2021 년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2022.03.10.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04.11.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05.10.	감사위원회	2022 년 1 분기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2022.05.11.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06.10.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07.11.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08.10.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08.12.	감사위원회	2022 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2022.09.13.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10.11.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11.10.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2022.11.14.	감사위원회	2022 년 3 분기 감사실적 및 결과 보고
2022.12.12.	감사위원회	월간보고(감사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활동 결과, 계획 등)

※ 월간보고는 각 감사위원에게 E-Mail 발송(서면 보고)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조직의 최상위 기구인 이사회에서 승인한 위험관리전략의 이행을 위해 위험자본 관리계획,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 시스템 투자 등 위험관리 관련 중장기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同 수립된 계획을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위험 관련 의사결정권한을 적정하게 위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전사적인 위험관리를 감독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위험관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경영전략에 부합되도록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며, 수립된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의하거나 위험관리위원회 산하조직에 위임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구체적인 위험관리절차 등을 결정하는 위험관리집행위원회와 개별 거래를 심사하는 위험관리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 년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체계 및 관리 현황’ 보고를 통해 위험관리조직의 구성과 역할, 위험관리 제규정 체계, 위험한도의 설정·배분·관리, 위기상황대응 절차 등 회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방침과 관리체계를 공유하였습니다.

(2)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 제 40 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부담 가능한 전체 위험한도 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담당부서가 회사의 각종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산의 구성 상태와 그 운영성과 및 향후 전망 등을 바탕으로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정 자본건전성 비율, 총자본사용가능금액 등을 고려하여 회사 전체위험한도를 반기마다 설정하고 있으며, 同 한도의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2022 년 총 2 회에 걸쳐 위험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위험을 사전에 설정한 위험수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승인한 회사 전체 위험한도를 감안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산하의 위험관리집행위원회에서 반기마다 부문별 위험한도를 배분함으로써 시장환경변화 및 순자본 변동에 따른 위험한도 설정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회사의 위험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2022년 하반기 전사 위험액 한도 및 운용자산한도, 손실한도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제 5 차 위험관리집행위원회에서 부서별 한도와 비즈니스별 주요한도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 년 제 7 차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2023 년 상반기에 적용될 전사 위험액 한도 및 운용자산한도, 손실한도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2022 년 제 7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의 인식, 측정 및 분석, 모니터링, 보고 등 유동성위험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하여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유동성위험 허용 수준 및 자산운용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한 유동성위험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유동성위험관리 관련 부서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등 유동성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5)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임과 해임,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총비용 10 억원 이상의 위험관리정보시스템 도입,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위기상황 대처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전사 위험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기타 위험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연 1 회 이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 년 제 1 차 이사회에서 2021 년 전사 위험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및 한도관리 현황, 위원회 개최사항과 2022 년 위험관리 사업계획,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들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 년 말 현재 위험관리위원회는 2 인의 사외(비상임)이사와 1 인의 사내(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 년 제 8 차 이사회를 통해 의학박사 출신 금융전문가인 문여정 사외이사(現 IMM 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다년간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에서의 업무경력으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김형태 사외이사(現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권희백 대표이사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노태식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권희백	사내(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제 8 차 이사회>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노태식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권희백	사내(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노태식 사외이사: 2022.5.13. 次 사임

<제 8 차 이사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문여정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5.16.	제 62 기 정기주총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5.16.	제 62 기 정기주총일
권희백	사내(상임)	위 원	2022.05.16.	제 62 기 정기주총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위험관리위원회는 분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요 안건이 없는 경우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위험관리규정 제 8 조)

2022년에는 총 7 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율은 100%입니다. 7 차례의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결사항 5 건, 보고사항 6 건, 총 11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은 전사 위험한도 설정 2 건, 전사 위험한도 초과 사전 승인 1 건,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위원 변경 1 건,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 개정 1 건이었으며, 보고사항은 위험관리위원 연수 1 건, 분기별 위험관리 현황 보고 3 건, 관찰대상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 보고 1 건,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1 건이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1)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 2022.04.20. (9:4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4.15.]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형태	문여정	권희백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관리위원 연수	특이의견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국내 ETP 시장동향, 규제 속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위험관리위원 대상 연수를 진행

(2) 제 2 차 위험관리위원회: 2022.05.10. (14:0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5.06.]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형태	문여정	권희백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관리현황보고	특이의견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2022 년 1 분기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현황, 주요 위험한도 사용현황, 위험관리 회의체 개최사항 등 위험관리현황에 대해 정기 보고

(3) 제 3 차 위험관리위원회: 2022.06.27. (14:0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6.24.]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여정	김형태	권희백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3. 의결 안건				
가. 2022 년 하반기 위험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2022 년 전사 위험한도에 상반기 손익 등을 반영하여 위험액한도, 운용자산한도, 전사 손실한도 등 2022 년 하반기 위험한도 설정을 의결

(4)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 2022.08.12. (10:4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8.09.]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여정	김형태	권희백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관리현황보고	특이의견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2022 년 2 분기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현황, 주요 위험한도 사용현황 등 위험관리현황에 대해 정기 보고

(5) 제 5 차 위험관리위원회: 2022.09.19. (09:2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9.16.]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여정	김형태	권희백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관찰대상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	특이의견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2022 년 3 월말 기준 부동산 및 SOC 투자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찰대상 익스포저를 선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고

(6)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 2022.11.14. (14:30 개최)

[안전통지일: 2022.11.11.]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여정	김형태	권희백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관리현황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전사 위험한도 초과 사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위원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가. 2022 년 3 분기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현황, 주요 위험한도 사용현황, 위험관리 회의체 개최사항 등 위험관리현황에 대해 정기 보고

[의결]

- 가. 채무보증 대지급으로 인한 위험액 한도 적용 예외 및 전사 위험한도 초과에 대해 사전 승인을 의결
 나. 담당임원 이동으로 인한 위원직 조정으로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위원 변경을 의결

(7) 제 7 차 위험관리위원회: 2022.12.27. (13:30 개최)

[안전통지일: 2022.12.23.]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여정	김형태	권희백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제정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23 년 상반기 위험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환경·사회적 문제에 대한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하여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마련하여 보고

[의결]

- 가. 2022 년 전사 위험한도에 상반기 손익 등을 반영하여 위험액한도, 운용자산한도, 전사 손실한도 등 2023 년 상반기 위험한도 설정을 의결
 나. 유동성위험 관리 원칙 신설과 외화유동성 관리 대상 및 규제비율 명확화를 위한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의결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투자증권은 매년 1 회 이상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서(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 ② 직무평가(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
- ③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 구성(적정 인원수, 사외이사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 운영(개최 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역할과 책임(이사의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간 의사소통,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평가점수는 직무평가서 40 점, 직무평가(정량) 30 점,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정성) 30 점으로 총 100 점 만점으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항목별 차등배점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평가 절차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안)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1) 직무평가서(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사외이사 직무평가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40 점	40 점 만점

- ① 전문성: 금융업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이해 정도, 전문성 향상 위한 정보수집
- ② 직무 공정성: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 정도, 주주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③ 윤리성/책임성: 기업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이해 및 의사결정 반영 정도, 이해상충행위 금지, 비밀 유지 등 기본윤리 준수 정도
- ④ 충실성: 사외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 확보에 충분한 노력 정도 및 개인 일정 관리 정도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정량평가, 회사작성)

구분		참여율	평가점수 평균	비고
정량평가	참여횟수/ 개최횟수	100%	30 점	30 점 만점

※ 참여율: 사외이사의 위험관리위원회 참여횟수/개최횟수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정성평가, 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위험관리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구성, 운영, 역할과 책임	30 점	30 점 만점

- ① 구성: 적정 인원수,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수준
- ② 운영: 개최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③ 역할과 책임: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원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위원회 평가는 정성평가 점수 70 점(70 점 만점 기준), 정량평가 점수 30 점(30 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총점 100 점으로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 내부거래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한화투자증권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 등과의 중요한 내부거래를 사전 심의·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비상임)이사 3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2) 구체적 역할

(1) 내부거래 심의·의결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 12 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계열사와의 분기 누적 거래 50 억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등 거래
- 계열사와의 단일거래 대상 5 억원 이상의 수의계약(경쟁입찰 유찰로 인한 단독 계약 제외)에 의한 용역 및 물품 구매 등 거래
(단, 전산 관련 재계약 체결 시는 10 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내부거래 조사 요청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내부거래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 건의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사유 해당여부, 비계열 회사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은 3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 4 조)

2022 년 말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3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형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원용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노태식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제 8 차 이사회>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노태식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문여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노태식 사외이사: 2022.5.13. 字 사임

<제 8 차 이사회 이후>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5.16.	제 62 기 정기주총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5.16.	제 62 기 정기주총일
문여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5.16.	제 62 기 정기주총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2 년 내부거래위원회는 총 2 회 개최하였으며,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83%였습니다.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총 3 건을 사전 심의·의결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1) 제 1 차 내부거래위원회: 2022.03.23. (11:25 개최)

[안건통지일: 2022.03.18.]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형태	노태식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출장)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가. 2022 년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금액 변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김형태 사외이사 불참 사유: 3/23~25 부친 응급 입원 및 수술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21 년 매출액 확정에 따른 '22 년 브랜드 라이선스 예상 사용료 변경 심의

(2) 제 2 차 내부거래위원회: 2022.12.27. (11:25 개최)

[안건통지일: 2022.12.23.]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김형태	선우혜정	문여정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23 년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및 예상금액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ITO 위탁 계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2023 년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예상 사용료 심의

나. 전산운용업무 위탁 계약이 만료되어 채널, 인프라 IT 업무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갱신 계약 심의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내부거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내부거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투자증권은 매년 1 회 이상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서(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 ② 직무평가(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
- ③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 구성(적정 인원수, 사외이사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 운영(개최 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역할과 책임(이사의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간 의사소통,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평가점수는 직무평가서 40 점, 직무평가(정량) 30 점,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정성) 30 점으로 총 100 점 만점으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항목별 차등배점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평가 절차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안)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직무 평가서는 크게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항목으로 구분되는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을 조사한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직무평가서(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사외이사 직무평가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40 점	40 점 만점

- ① 전문성: 금융업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이해 정도, 전문성 향상 위한 정보수집
- ② 직무 공정성: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 정도, 주주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③ 윤리성/책임성: 기업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이해 및 의사결정 반영 정도, 이해상충행위 금지, 비밀 유지 등 기본윤리 준수 정도
- ④ 충실성: 사외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 확보에 충분한 노력 정도 및 개인 일정 관리 정도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정량평가, 회사작성)

구분		참여율	평가점수 평균	비고
정량평가	참여횟수/ 개최횟수	100%	30 점	30 점 만점

※ 참여율: 사외이사의 내부거래위원회 참여횟수/개최횟수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정성평가, 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내부거래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구성, 운영, 역할과 책임	30 점	30 점 만점

- ① 구성: 적정 인원수,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수준
- ② 운영: 개최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③ 역할과 책임: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원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한화투자증권 내부거래위원회 평가는 정성평가 점수 70 점(70 점 만점 기준), 정량평가 점수 26.7 점(30 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총점 96.7 점으로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 경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한화투자증권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 및 정관상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로부터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 규정 제 10 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자기자본 5%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진출
- 인허가 업무
- 복지기금의 출연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
- 자기자본 5% 이하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의 취득, 처분, 건축
- 지점, 사무소 및 해외사업소의 설치, 이전, 폐쇄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5% 미만의 출자(既 투자 분의 증액 포함)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나. 구성

1) 총괄

경영위원회 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년 말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와 2 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경영위원회 규정 제 4 조)

2) 구성원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권희백	사내(상임)	위원장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한종석	사내(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김민수	사내(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권희백	사내(상임)	위원장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한종석	사내(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김민수	사내(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 특이사항: 김민수 사내이사 2022 년 12 월 31 일자 사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2 년 경영위원회는 총 9 회 개최하였으며,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6%였습니다. 점포 폐쇄 4 건, 지분투자 7 건을 포함한 총 11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1) 제 1 차 경영위원회: 2022.02.15. (09:0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2.10.]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Double me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3D 기반 AR 플랫폼 업체인 ‘Double me’ 상환전환우선주 신주 투자 심의

(2) 제 2 차 경영위원회: 2022.03.28. (09:0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3.24.]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점포 통폐합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LORA TECHNOLOGIES 지분투자 증액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COGNI Inc. 지분투자 증액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금융플라자 GFC 지점 폐쇄 심의

나. 기 투자된 ‘LORA TECHNOLOGIES.Ltd’ 추가 지분투자 심의

다. बैंक솔루션 기반 통합 금융서비스 업체인 ‘COGNI Inc.’ 지분투자 심의

(3) 제 3 차 경영위원회: 2022.05.16.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5.12.]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Need Inc.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미국 소재의 헬스케어 업체 ‘Need Inc.’ 지분투자 심의

(4) 제 4 차 경영위원회: 2022.06.16.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6.10.]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Neurosity Inc.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최첨단 뇌파 측정 기기 개발, 판매 업체 ‘Neurosity Inc.’ 지분투자 심의

(5) 제 5 차 경영위원회: 2022.07.12.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7.08.]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점포 통폐합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올림픽지점 폐쇄 심의

(6) 제 6 차 경영위원회: 2022.07.26.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7.22.]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Theori Inc.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시스템 보안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 수행 업체 ‘Theori Inc.’ 지분투자 심의

(7) 제 7 차 경영위원회: 2022.07.29.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7.26.]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점포 통폐합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반포지점 폐쇄 심의

(8) 제 8 차 경영위원회: 2022.09.29.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9.23.]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다자간매매채결회사 지분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한국거래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자간매매채결회사’ 지분투자 심의

(9) 제 9 차 경영위원회: 2022.12.30. (09:00 개최)

[안건통지일: 2022.12.26.]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희백	한종석	김민수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의결 안건				
가. 점포 통폐합의 건	찬성	찬성	-	가결

※ 김민수 사내이사 불참 사유: 12/26(월)~12/30(금) 국내 지방 점포 순시로 인한 불참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과천지점 폐쇄 심의

3) 평가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내 위원회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10. ESG 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한화투자증권 ESG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주주 및 소비자, 임직원, 거래처,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공존을 추구하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에서 건전한 투자 및 기업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 구체적 역할

ESG 위원회는 ESG 위원회 규정 제 6 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ESG 전략 및 정책
-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SG 추진과제 이행 현황

나. 구성

1) 총괄

ESG 위원회 위원은 3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ESG 위원회 규정 제 3 조)

2022 년 말 현재 ESG 위원회는 ESG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외이사 2 인과 사내이사 1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김원용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한종석	사내(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문여정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한종석	사내(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2 년에는 총 3 회의 ESG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2 년도 ESG 위원회 부의된 안건은 총 4 건이었으며, 의결안건 1 건, 보고안건 3 건입니다.

결의안건인 “2022 년 ESG 경영 전략 및 정책 승인의 건” 1 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1) 제 1 차 ESG 위원회: 2022.06.27. (09:30 개최)

[안건통지일: 2022.06.24.]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여정	선우혜정	한종석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1 분기 ESG 추진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22 년 ESG 경영 전략 및 정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1)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당사 ESG Materiality 를 주제로 한 전사 ‘중점추진과제’와 ‘일반추진과제’ 선정 및 기획에 대한 보고, 과제 수행 전 임직원 602 명을 대상으로 ESG 관련 교육 실시
- 2) 주주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
- 3) 임직원 ESG 마인드셋 함양을 위한 사내 발간물 제작 기획
- 4)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그린 오피스’ 로드맵 수립 준비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준비, ESG 리서치 보고서 발간, 해상풍력 등 친환경 투자 추진
- 5) 사회 관련 ‘CCM’ 재인증 추진 등 고객 중심경영 추진, 인권 관련 인권영향평가와 가족친화기업 인증 추진, 사회공헌 관련 ‘언택트 라플 프로그램’, ‘어린이 금융탐험대 전국퇴직금융인협회와협약식’, ‘Blooming Day’ 등의 사회공헌활동 실시
- 6)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임직원 윤리·준법 서약서 제출, 설 명절 전후 협력업체에 당사 임직원에게 업무 관련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준법경영 서한 발송 및 ‘Compliance Day’를 활용하여 전년 업무 수행 과정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자가점검 실시 및 기록 유지 등 상기 6 가지 등에 대해 ‘2022 년 1 분기 추진한 ESG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2021 년 당사에서 제조 또는 판매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점검 주요내용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결]

- 가. 1) 2022 년 ESG 경영 사업계획 관련 ‘ESG 경영 추진 전략 체계’(로드맵, 비전, ESG 경영 전략목표, 핵심영역, 중점추진과제) 심의
 2) 전사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ESG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ESG 위원회’ 지원 사내 협의기구로 ‘ESG 경영 협의회’ 설립 심의
 3) ESG 혁신활동 ‘중점추진과제’ 및 ‘일반추진과제’ 기획 건 심의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ESG Materiality 및 비재무리스크에 대한 심의·확인 및 홈페이지 내 ‘ESG 경영’ 반영 심의
 5) 임직원 ESG 마인드셋 확산을 위한 ESG 개념 및 중요성, 주요 사례 및 최신 정보를 담은 사내 발간물 ‘ESG Plus Day’와 ‘ESG Weekly’ 기획 건 심의
 6) 환경 관련 사내 그린 오피스 구축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금융상품 라인업 구축 및 대출, 투자 건 심의
 7) 고객 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추진과 고객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영업 인프라 구축, 비대면 고객 케어 강화와 고령 투자자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 추진에 대해 심의
 8) 인권 관련 인권경영 현장 제정 및 공표 추진, 가족친화기업 인증 추진 등 심의
 9)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Together Plus’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기획 건 심의
 10)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 다양성과 전문성, 임직원 준법경영, 기후변화 대응 및 공시 관련 ISSB 대응 준비 등에 대해 심의 하는 등 상기 10 가지 등에 대한 ‘2022 년 ESG 경영 전략 및 정책 승인의 건’에 대해 승인 증권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임원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기본보수 지급기준을 '기본급+조정급'으로 변경하여 '임원보수규정'개정

(2) 제 2 차 ESG 위원회: 2022.08.12. (10:2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8.09.]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여정	선우혜정	한종석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2 년 2 분기 ESG 추진 현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특이이견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1) ESG 혁신활동에서 산출한 전사 ESG 과제와 제 1 차 ESG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ESG Materiality 를 기반으로 하여 ‘중점추진과제’ 7 개와 ‘일반추진과제’ 15 개 산출 및 진행경과 보고
 2) ‘ESG 경영 협의회’ 신설 완료(4 월) 및 ‘ESG 경영 협의회’의 월간/분기 회의 추진 보고
 3) ESG 마인드셋 제고를 위한 ‘발간물’(ESG Plus Day, ESG Weekly) 보고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완료 및 홈페이지 업데이트 보고
 5) 환경경영 관련 사내 그린 오피스 로드맵 수립 완료 및 진행 보고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ESG 채권 표준관리체계 수립, ESG 관련 리서치 보고서, 친환경 투자, 친환경 금융상품 라인업 구축, 지속가능채권 대표주관 수행, ESG 파생결합증권 발행 등) 보고
 6) CCM 재인증 추진 관련 공적서 준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 준비 등 보고
 7)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 위험성평가 실시지침 제정, 안전보건방침 등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및 준비
 8) 인권경영현장 제정 및 공시 관련 인권경영현장, 행동규범,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수립 완료 보고
 9) 사회공헌활동 Blooming Day, Together Plus 금융멘토링 실시 등 보고
 10) 지배구조 관련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점검 실시 및 내부통제 집합교육 진행 및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사규 개정 보고
 11) 2022 년 하반기 ESG 경영 주요 추진계획으로 ① ESG 경영 내재화 및 고도화를 위해 추진한 ESG 혁신활동 혁신경진대회 개최, ② ESG 경영 협의회 및 ESG 마인드셋, ③ ESG 평가 피드백 대응과 평가문항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반영한 2023년 ESG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④ 비재무 리스크 관련 CDP 및 TCFD 대응방안 수립 추진 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

(3) 제 3 차 ESG 위원회: 2022.11.14. (17:05 개최)

[안건통지일: 2022.11.11.]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문여정	선우혜정	한종석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2 년 3 분기 ESG 추진 현황 및 4 분기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

- 가. 1) ESG 혁신활동 과제인 중점추진과제 7 개와 일반추진과제 15 개에 대해 진척사항 보고
2) 3 분기 ESG 경영 협의회 운영 성과 및 ESG 마인드셋 제고 관련 발간물 보고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글 및 영문버전 공시 보고
4) 생물종다양성 보전활동 2 회 실시 보고 및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챌린지 동참 보고
5) 환경 관련 탄소배출권 사업 영위하는 스타트업 추가 투자 검토 등, 사회 관련 안전보건 프로세스 구축 완료 보고 등, 지배구조 관련 성과보상체계 개선안 검토 보고
6) 4 분기 주요 추진 계획 관련 ① 2023 년 ESG 사업계획 수립, ②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1 차 사후심사, ③ ESG 경영 내재화 추진, ④ 2023 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컨설팅 업체 선정 외 ⑤ 환경 관련 지속가능금융 확대 주요 계획, 사회 관련 인권영향평가 자체 점검 실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회공헌, 지배구조 관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운영 종합 점검 개선과제 이행 등을 보고
※ 제 3 차 ESG 위원회 보고 완료 후 개최한 제 14 차 이사회 제 1 호 보고안건으로 “ESG 중대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주요 과제 추진현황 보고” 별도 보고 완료
- 제 1 차 ESG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ESG Materiality(① ESG 상품 및 서비스 제공, ② 고객소통 확대 및 소비자 권익보호, ③ 인권경영, ④ 조직문화 개선 및 복리후생, ⑤ 고객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확대, ⑥ 책임투자 원칙 수립 및 ESG 투자 확대, ⑦ ESG 추진체계 및 실천인프라, ⑧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⑨ 기후변화 대응, ⑩ 사회가치 창출)기반으로 추진한 ESG 혁신과제(중점추진과제 및 일반추진과제)의 사내 진척사항 점검 및 성과 공유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 완료

3) 평가

한화투자증권은 ESG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투자증권은 매년 1 회 이상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ESG 위원회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서(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 ② 직무평가(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
- ③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 구성(적정 인원수, 사외이사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 운영(개최 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역할과 책임(이사의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간 의사소통,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평가점수는 직무평가서 40 점, 직무평가(정량) 30 점,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정성) 30 점으로 총 100 점 만점으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항목별 차등배점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평가 절차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안)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직무 평가서는 크게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항목으로 구분되는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을 조사한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직무평가서(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사외이사 직무평가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40 점	40 점 만점

- ① 전문성: 금융업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이해 정도, 전문성 향상 위한 정보수집
- ② 직무 공정성: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 정도, 주주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③ 윤리성/책임성: 기업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이해 및 의사결정 반영 정도, 이해상충행위 금지, 비밀 유지 등 기본윤리 준수 정도
- ④ 충실성: 사외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 확보에 충분한 노력 정도 및 개인 일정 관리 정도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정량평가, 회사작성)

구분		참여율	평가점수 평균	비고
정량평가	참여횟수/ 개최횟수	100%	30 점	30 점 만점

※ 참여율: 사외이사의 ESG 위원회 참여횟수/개최횟수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정성평가, 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ESG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구성, 운영, 역할과 책임	30 점	30 점 만점

- ① 구성: 적정 인원수,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수준
- ② 운영: 개최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③ 역할과 책임: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원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한화투자증권 ESG 위원회 평가는 정성평가 점수 70 점(70 점 만점 기준), 정량평가 점수 30 점(30 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총점 100 점으로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1.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 괄

한화투자증권의 보상체계는 회사의 성과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 정책을 상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한화투자증권 정관 제 40 조를 근거로 하여 2012 년 2 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 규정 제 8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 구 성

1) 총 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는 보수위원회 규정 제 3 조에 의거하여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보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2022 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 인(선우혜정, 김형태, 한종석)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 인의 위원(선우혜정, 김형태)이 사외이사로서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선우혜정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위원장 외에도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김형태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위원 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종석 사내이사는 경영지원실장(인사담당임원) 경력을 바탕으로 증권업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보수위원회는 보상관련 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공정성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 등 복합적이고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유무	약력
선우혜정	이사	사외이사	○	現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부교수
김형태	이사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
한종석	이사	사내이사	○	現 한화투자증권 WM 본부장

[기준일: 2022.12.31.]

2) 구성원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한종석	사내(상임)	위 원	2021.03.24.	제 61 기 정기주총일

<2022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제 8 차 이사회>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노태식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한종석	사내(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노태식 사외이사: 2022.5.13. 字 사임

<제 8 차 이사회 이후>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선우혜정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김형태	사외(비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한종석	사내(상임)	위 원	2022.03.23.	제 62 기 정기주총일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 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당사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보상제도의 적정성 평가 및 연차보상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총 보상 중 상당 부분은 변동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은 이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원칙에 따라 2023 년 1 월 30 일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2022 년 임원 성과급(PI) 산정 결과 및 이연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23 년 2 월 28 일 개최된 제 2 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2022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2022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일 기준 2022 년도 성과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보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성과보상 확정 이후 추가 공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9 조 ④항

금융회사는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지배구조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22년 2월 4일 개최된 2022년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개편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성과에 연동한 보상을 실시하되 위험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건전한 보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2023년 1월 30일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2년 임원 성과급 산정 및 이연성과급 지급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 성과급 배분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위법, 위규 사항 등을 고려한 과거 이연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개최된 제 2차 보수위원회에서는 RSU 부여 대상자 및 규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한화투자증권 보수위원회는 보수관련 안건(변동보상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 지급,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상체계 재조정 등)을 심의 시 법규 전반, 내규, 회사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 규모 등을 검토하고 상충되는 바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보수위원회 규정 제 3 조에 의거 보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보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독립적인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보수위원회 보상정책은 회사 內 모든 사업부 및 지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한화투자증권은 보수위원회규정 제 5 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결정 및 지급여부,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는 본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일 기준 미확정으로, 성과보수 확정 후 산정내역 및 이연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 차기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 규정 제 4 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개최 3 일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상기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상기 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22 년 2 월 4 일 제 1 차 보수위원회, 3 월 3 일 제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개편안 및 직전 회계연도(2021 년)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급 산정내역과 이연성과급 지급 여부, RSU 부여 대상자 및 규모, 2021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 년 보수위원회 개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1) 제 1 차 보수위원회: 2022.02.04.(08:30 개최)

[안전통지일: 2022.01.28.]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선우혜정	김형태	한종석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개편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1 년 임원 성과급(PI) 산정 및 이연성과급 지급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가.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개편안 적정성 심의/의결

나. 2021 년 임원 성과급(PI) 산정 내역 및 이연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항 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선우혜정	김형태	한종석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21 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급 산정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연성과급 지급 심의(일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연성과급 지급 심의(진행 소송 관련)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RSU 부여 대상자 및 규모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1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의결]

- 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2021 년 성과급 산정 내역에 대한 심의/의결
- 나. 과거 성과급 中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연성과급에 대한 지급여부 심의/의결
- 다. 진행 소송 관련 임직원의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연성과급 및 既 지급 유보중인 성과급에 대한 지급여부 심의/의결
- 라. 2022 년 RSU 부여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심의/의결
- 마. 2021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대한 심의/의결

4) 평가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 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서(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 ② 직무평가(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
- ③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 구성(적정 인원수, 사외이사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 운영(개최 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역할과 책임(이사의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간 의사소통,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평가점수는 직무평가서 40 점, 직무평가(정량) 30 점,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정성) 30 점으로 총 100 점 만점으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항목별 차등배점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평가 절차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안)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직무 평가서는 크게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항목으로 구분되는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율을 조사한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직무평가서(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사외이사 직무평가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40 점	40 점 만점

- ① 전문성: 금융업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이해 정도, 전문성 향상 위한 정보수집
- ② 직무 공정성: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 정도, 주주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③ 윤리성/책임성: 기업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이해 및 의사결정 반영 정도, 이해상충행위 금지, 비밀 유지 등 기본윤리 준수 정도
- ④ 충실성: 사외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 확보에 충분한 노력 정도 및 개인 일정 관리 정도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정량평가, 회사작성)

구분		참여율	평가점수 평균	비고
정량평가	참여횟수/ 개최횟수	100%	30 점	30 점 만점

※ 참여율: 사외이사의 보수위원회 참여횟수/개최횟수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정성평가, 사외이사 자기평가)

구분		평가점수 평균	비고
‘보수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구성, 운영, 역할과 책임	30 점	30 점 만점

- ① 구성: 적정 인원수, 구성 비중,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구성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수준
- ② 운영: 개최빈도 및 소집절차의 적정성, 회의 자료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 ③ 역할과 책임: 의견 개진 수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원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한화투자증권 보수위원회 평가는 정성평가 점수 70 점(70 점 만점 기준), 정량평가 점수 30 점(30 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총점 100 점으로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보수 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 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순영업수익, 비용, 손익), 리스크관련 지표(RAROC)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부/사업부별 성과 개선도 등을 추가로 활용합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세전이익 및 본부별 손익 등) 및 비재무성과를 포함하여 성과를 측정하며, 직원의 경우 인당 생산성 및 인사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전사 성과 및 사업부 성과를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본부별 성과보상 재원을 산정합니다. 본부 재원이 산정되면 상기의 성과측정 방식 및 사업부·팀별 재무/비재무 지표를 검토하여 사업부·팀의 성과급 재원을 배분하고, 이후 개인 인사평가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 단위로 배분합니다. 개인 단위 배분 시 합리적인 평가 반영을 위하여 소속 팀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담당 임원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합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급 중 일정비율은 당해년도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이연된 보수액 지급시에는 당사 취업규칙 제 37 조 2 항에 의거,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지급 기준, 시기, 방식 등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 규정위반, 징계, 손실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사내 인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수여부, 정도,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연된 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 미확정의 결정 기준

이연된 보수액은 매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기 '나' 항의 조정 및 부지급 정책에 해당하는 대상자 유무를 심의하고 지급 여부,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해당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지급 여부를 확정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은 변동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당사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을 기본으로 하되, 임원의 경우 책임 경영을 위해 지급받은 성과금의 50%를 당사 주식으로 매입하여 퇴임 시까지 보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동을 위해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의 성과보수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 Unit)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현금으로 보상 받는 임원의 경우에도 상기 '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성과금의 50%를 당사 주식으로 매입하여 퇴임 시까지 보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금은 이연지급하고, 이외 직원의 성과금은 일시 지급합니다.

이연 적용 대상자인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당해년도에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이후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합니다(13%/13%/14%)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한화투자증권은 개인보다 조직성과를 중요시하는 보상 철학을 바탕으로 2014 년 개인성과급을 폐지하고 조직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과와 연봉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개별연봉제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식 함양 및 성과 공유라는 취지 하에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한화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연봉산정 시 수행 중인 직무가치, 역할, 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수당을 월 급여 항목으로 통합 및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보수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자문을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2022 년의 경우 별도 자문을 요청한 내역은 없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확인서를 매년 징구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22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한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개편안을 심의·의결 하여 보다 건전한 성과보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2021 년)	1,239	873	1.42	1,161	1.07
당해년도(2022 년)	1,465	1,911	0.77	1,179	1.24

-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 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억원]

구분		임원	직원					계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전년도(2021 년)	보수총액	83	319	352	236	121	128	1,239
	성과보수액	22.2	112.9	106.3	67.7	41.1	15.7	365.9
당해년도(2022 년)	보수총액	125	346	408	293	132	159	1,465
	성과보수액	55.6	139.0	156.3	111.4	40.8	31.6	534.7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A)}	기본급 ^{B)}	성과보수액 ^{B)}	
					이연지급대상 (명/억원)
전년도(2021 년)	임원	29	56.9	81.6	28(38.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68	57.2	151.5	68(60.4)
당해년도(2022 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A) 해당년도 중 6 개월 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B)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A)}	주식연계상품 ^{B)}	기타 ^{C)}
전년도(2021 년)	임원	81.6	72.3	4.7	4.7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51.5	151.5	-	-	-
당해년도(2022 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A) 주식: 부여 시점 기준 주가 적용하여 금액 기재

B) 주식연계상품: 상기 주 A)의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부여시점의 기준주가 적용)

C) 기타: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2021 년)	임원	130.2	20.5	109.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30.6	33.5	97.1
당해년도(2022 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이연보수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

- 당해년도 발생 성과에 대한 보수액을 익년도 1/4 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연보상액을 당해년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 주식으로 이연된 성과보수는 현금 환산 기재 (해당년도말 종가 적용)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주]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A)}	기타
전년도(2021 년)	임원	130.2	72.7	449,688	28.7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30.6	130.9	-	-	-
당해년도(2022 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A) 주식연계상품은 부여시점 대비 해당년도말 기준 주식가치 비율 반영하여 환산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전년도(2021 년)	임원	130.2	57.7	38.4	19.1	15.0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30.6	60.4	37.8	21.4	10.9	-
당해년도(2022 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1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1 년(t 기) 발생분, 2020 년(t-1 기) 발생분, 2019 년(t-2 기) 발생분, 2018 년(t-3 기) 발생분, 그 외는 ‘이전’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금액 ^{D)}
		이연보수 조정액 ^{A)}	직접적 조정 ^{B)}	간접적 조정 ^{C)}	
전년도(2021 년)	임원	+19.4	-	+19.4	109.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8.2	-8.2	-	97.1
당해년도(2022 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A) 해당년도말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B)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C)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증감된 부분을 기재

D)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 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1 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22 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

[별첨1] 정관

第 1 章 總 則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약칭 H.I.S.C)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 ① 회사는 다음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7. 전기 각 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
- ②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반 경영업무를 해당 업무 관련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 수행한다.
- ③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반 부수업무를 해당 업무 관련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 수행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第 2 章 株 式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억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 (이익배당우선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
- ③ (삭 제)
- ④ (삭 제)
- ⑤ 회사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2 (의결권배제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이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 ⑤ 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⑧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4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⑦ 회사는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주식발행 및 배정)

-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10조의2(삭 제)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관계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 ①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는 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 3 章 社 債

제13조의 2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

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 4 章 株 主 總 會

제17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이사 또는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 및 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등기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 상무, 상근감사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부사장, 전무, 상무, 상근감사위원의 수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주주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 5 章 理 事, 委員會, 理事會

제29조 (이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서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2.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사외이사 등 후보의 추천)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제1항의 후보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② 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연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차회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제33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전략기획,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수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업무의 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

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 하고 회의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8조 (이사의 결의방법)

- ① 이사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와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및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위험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第 6 章 監査委員會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사외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⑦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 이상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직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등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상근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원활한 지휘 및 감독을 위하여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 한한다)을 둘 수 있다.

제46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第 7 章 計 算

제47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0조 (삭 제)

제51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금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5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도 상법 또는 기타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2] 이사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또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2016.10.10 본 조 전면 개정)

-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함)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④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② 임시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7조 (의사)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결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2.12.27 본 항 개정)
 1. 제8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2022.12.27 본 호 신설)
 2. 제8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에 관한 결의: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2022.12.27 본 호 개정)
 3. 제8조 제1항 제5호 아)목, 자)목, 카)목에 관한 결의: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2022.12.27 본 호

신설)

4. 제8조 제1항 제5호 타)목에 관한 결의: 재적이사 전원 찬성(2022.12.27 본 호 신설)

② 이사회에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이사는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2.09.03 본 항 개정)

제8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다) 정관의 변경

라) 자본의 감소

마)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2022.12.27 본 목 개정)

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사)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아)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자)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차)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타) 이사의 보수한도

파) 최대주주, 계열회사 등과의 일정 규모 이상 거래로서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2022.12.27 본 목 신설)

하) 법정준비금의 감액(2022.12.27 본 목 신설)

거)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등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2022.12.27 본 목 신설)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2022.12.27 본 목 신설)

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022.12.27 본 목 신설)

라)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의 선임 및 해임(2016.10.10 본 목 신설)

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2016.10.10 본 목 개정)

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규정 제정 및 개폐(2022.12.27 본 목 신설)

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개폐(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
(2022.12.27 본 목 신설)

아)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개폐(2022.12.27 본 목 신설)

자)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2022.12.27 본 목 신설)

차)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2022.12.27 본 목 신설)

카)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결정(2022.12.27 본 목 신설)

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2022.12.27 본 목 신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다)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마) 자기주식의 소각

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차입 등 채무부담

(단, 만기 7일 이하의 금융기관 차입 및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은 제외)

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 재평가 신고(2022.12.27 본 목 신설)

4.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자 지분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투자(2018.1.15 본 목 개정)

나)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출자(기투자분의 증액 포함)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다)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건축

라) 자기자본 5%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진출

5. 이사 및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 운영 및 폐지

다)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단,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

라)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단, 감사위원회 결의는 재결의 불가)

마) 이사의 경업, 겸직에 대한 승인

바) 회사비용으로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사) 이사회 규정 개폐

아)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 등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자)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로서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2022.12.27 본 목 개정)

차) 국내 계열회사 등과의 일정규모 이상 거래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2022.12.27 본 목 신설)

카) 대주주와의 일정규모 이상 거래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2022.12.27 본 목 신설)

타)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과 유가증권 거래 또는 신용공여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2022.12.27 본 목 신설)

6. 기타

가) 소송가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 또는 이사와 관련한 소송의 제기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다) 위원회가 그 결의를 통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라) 기타 법령 또는 정관 및 사규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시행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상법에 의한 주주제안(2022.12.27 본 호 신설)

4.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2022.12.27 본 호 신설)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2022.12.27 본 호 신설)

6.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2022.12.27 본 호 신설)

7. 기타 법령 또는 정관 및 사규에 정하여진 사항,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2022.12.27 본 호 개정)

제8조의 2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2008.4.22 본 조 신설)

제9조 (의안설명)

회의에 부의된 의안 설명은 의안 제출 부서의 부서장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안 제출 부서 부서장의 유고 시에는 해당 부서의 실무자 또는 기타 의장이 지명한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임)

-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11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 ① (2008.4.22 삭제)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 ① 이사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에 관한 실무를 처리한다.

제13조 (부의절차)

- 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부의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②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각 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제14조 (의사록) (2012.09.03 본 조 개정)

이사회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2012.09.03 본 조 신설)

-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집행임원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의무) (2012.09.03 본 조 신설)

- ①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3] 보수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구성)

-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회 위원 중 1 인을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4 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매년 1 회 이상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일, 장소, 목적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 개최 3 일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통지한다.
- ③ 위원장은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심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결정 및 지급여부·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2.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② 제1항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을 말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의견청취 및 외부전문가 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보상제도의 적정성 평가 및 연차보상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실무주관부서)

위원회에 관련된 실무의 주관부서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제 10 조(규정의 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 단순한 용어변경 등의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별첨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구성)

-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대표(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4 조(역할)

- ① 위원회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물색하여 임원후보군을 관리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임원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검증한다.
- ③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8 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또는 외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조(실무주관부서)

위원회에 관련된 실무의 주관부서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제 11 조(규정의 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 단순한 용어변경 등의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업무)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를 사전에 심사 및 승인한다.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④ 위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위원회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사유 해당여부, 비계열 회사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회 의

제7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의안제출)

- ①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경영관리담당부서, 법무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내부거래를 하여야 한다.
 - 1. 내부거래의 필요성(타 사업자와 거래시 달성할 수 없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 2. 거래상대방의 역할(통행세 거래 해당 여부)
 - 3. 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의 적정성(시장가격 준수 및 제3자와의 거래에 준하는 가격협상)
- ② 제1항의 내부거래가 제12조에서 정한 부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는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를 작성하여 회의일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11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열사와의 분기 누적 거래 50억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등 거래
- 2. 계열사와의 단일거래 대상 5억원 이상의 수의계약(경쟁입찰 유찰로 인한 단독계약 제외)에 의한 용역 및 물품 구매 등 거래(단, 전산 관련 재계약 체결시는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2016.10.10 본 호 개정)
-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5조 (보고)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의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③ 제1항의 간사는 경영관리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 (규정의 개폐)

위원회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 4 조)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정 <개정 2018.11.14.>
5.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보고)

-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 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성

제 8 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9 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위원회의 권한위임)

-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②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간사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 ③ 일상감사사항 등 제 16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 ④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 ⑤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담당임원이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03.21.>
- ⑥ 제 5 항에 따라 감사담당임원이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03.21.>

제 3 장 회의

제 11 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 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3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제 3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회의소집을 못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부의사항)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마.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라. 외부감사인 선정 <개정 2018.11.14.>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아.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기타
가.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라.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관련 협의

- 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사.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 2.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6 조(감사의 위임)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사항
 -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7 조(준법감시인 관련 사항)

- ① 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은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감사업무 결과의 중요 내용을 보고 받는다.
 - 1. 준법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 2. 사고발생, 위규발생 가능 부서 및 지점 등에 대한 특별 검사
 - 3. 기타 증권관계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 ②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를 평가·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등에게 요구한다.

제 18 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제 16 조에 의해 위임 받은 사항 및 그 이외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연간 계획 및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칙

제 19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감사보조조직)

-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이하 “감사보조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 ③ 감사보조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④ 감사보조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 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21 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2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별표1] 감사담당임원의 업무 범위 (제10조 제6항 관련)

업무구분	수행 업무 내용	비고
감 사	<감사위원회 관련> 감사위원의 위원회 소집 불가 시 위원회 직무 대행 위원회 위임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위원회 정기 보고 <감사 실시 관련> 차기 회계연도 감사계획 작성 감사 실시 등 내부 감사부서 업무 총괄 및 감사 주관 일상/종합/특별/사고 감사에 관한 사항 주관 감사 실시 승인 및 일정 변경 승인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중대사항 및 결과 보고 받음 계약직 감사전문인력 채용 및 외부총원 승인 필요 시 감사직무관련 세부 지침, 시행세칙 등 제정 <감사 조치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및 대표이사 보고 감사결과 인사위원회 처분 요구 및 재심 청구 임원에 대한 금융범죄 고발 주체 『징계양정지침』 [별표] 개정 전결 <일상 감사 관련>	

업무구분	수행 업무 내용	비고
	대표이사 결재사항 공람 일상감사 실시 및 결과 보완·시정 요구 <기타> 기타 위원회 결의로 위임한 사항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부서장에게 리스크 관리 위원회 관련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받음	
준법 관리	준법감시인에게 상시감시, 검사결과, 모니터링 업무 및 내부제보 관련 등 중요사항 보고 받음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업무위탁계약 검토 IT운영담당부서장에게 전산장애 내역 보고 받음	
재무	이사회에 회계처리방침 변경 타당성에 관한 의견 제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내부회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작성 또는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즉시 보고 받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무건전성 및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고, 위험 선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내재가치 증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관리 기본원칙)

- ① 위험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위험관리목표와 정책을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한다.
- ②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는 모든 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영업활동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④ 종합적인 위험관리 및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조직을 구성하고,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통합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대상의 명칭, 거래의 형태 등에 불문하고 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경영활동에 적용한다.
- ② 위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사규, 이사회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③ 금융복합기업집단(“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위험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규정”을 따른다. (2022.01.14. 본 항 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험"이라 함은 특정한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말한다. (2018.02.05. 본 호 수정)
2. "포지션"이라 함은 업무활동의 결과로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2013.02.20 본 호 개정)
3. "위험액"이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방법(표준방법)에 따라 위험을 계량화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018.02.05. 본 호 수정)
4. "재무건전성비율"이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또는 이에 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8.02.05. 본 호 수정)
5. "위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위험관리 조직, 관련 규정 및 지침, 위험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등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말한다. (2016.10.10. 본 호 개정)
6. "신상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거래되는 시장, 위험속성, 손익구조 등이 기존의 상품과 달라 별도의 위험검토를 필요로 하는 상품 (2016.10.10. 본 목 신설)
 - 나. 거래처리, 거래확인, 결제, 대사 등을 위하여 기존의 업무절차와는 별도의 업무절차를 필요로

하는 상품

- 다. 기존의 전산시스템으로는 거래와 관련된 기록이 불가능한 상품
 - 라. 기존의 모델을 통하여는 가치평가 및 위험 측정이 불가능한 상품
 - 마. 기타 법무, 세무, 규정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상품
7. "신규사업"이라 함은 회사가 지속적인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업무영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3.02.20. 본 호 추가)
 - 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 나. 기존의 규정을 통하여 위험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
 8. "위험관리책임자"라 함은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를 말한다. (2020.05.15. 본 호 신설)
 9. "현업부서(장)"이라 함은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 등 각종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지원부서(장)"이라 함은 현업부서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결제, 회계처리 등 지원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1. "통제부서(장)"이라 함은 위험관리,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2. "위험관리담당부서"라 함은 위험의 인식, 측정, 분석, 통제 등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그 외 업무를 소관하는 하부 조직이 있는 경우, 해당 하부 조직은 제외한다. (2015.03.04. 본 호 개정)
 13. "VaR"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조건 하에서 일정 신뢰수준으로 일정 보유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금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값을 말한다.
 14. "신뢰수준"이라 함은 모수가 추정값 이내에 포함될 확률을 말한다.
 15. "민감도"라 함은 위험요인이 한 단위 변화할 때, 포트폴리오 또는 각 상품의 가치변화 값을 말한다.
 16. "신용익스포저"라 함은 거래상대방 또는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최대 손실 가능금액을 말한다 (2016.10.10. 본 호 개정)
 17. "고위험영역"이라 함은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객자산의 연계 등으로 포지션 청산이 용이하지 않은 자산, 부채, 부외항목, 포트폴리오 등을 말한다 (2016.10.10. 본 호 신설)

제2장 위험의 구분

제5조(관리대상 위험)

① 회사가 관리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위험: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2. 신용위험: 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부도,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위험(2013.02.20. 본 호 개정)
3. 유동성위험
 - 가. 시장유동성위험: 포지션 청산 시 해당자산의 거래량 부족 혹은 호가 실종 등으로 인한 위험(2013.02.20. 본 목 개정)
 - 나. 자금조달유동성위험: 자금 운용기간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자금의 유출에 따른 지급불능상태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고금리 조달 등으로 인한 위험(2013.02.20. 본 목 개정)
4. 운영위험: 부적절한 업무절차,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절차상의 오류, 임·직원의 부정 등으로 인한 위험

5. 법률위험: 법해석상 또는 계약서의 오류, 위법행위, 과세 및 기타 규제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위험
 6. 평판위험: 회사에 대한 외부의 여론이나 이미지가 악화됨으로 인한 위험
 7. 시스템위험: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위험
- ② 제1항의 위험은 계량화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량화가능 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2. 계량화불가능 위험: 법률위험, 평판위험, 시스템위험
- ③ 위험관리담당부서는 계량화에 투여되는 비용 대비 계량화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여 계량화가능 위험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3장 위험관리조직

제1절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제6조(이사회의 역할 및 심의·의결사항) (2016.10.10. 본 조 개정)

- ① 이사회는 위험관리조직의 최상위 기구로서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위험관리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6.10.10. 본 항 신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1.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위험관리규정 제·개정 및 폐지 (2016.10.10. 본 호 신설)
 3. 기타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사항 (2013.02.20. 본 호 추가)
- ④ 이사회는 위원회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받고,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1. 위험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2013.02.20. 본 호 개정)
 2.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3. 전사 위험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2016.10.10. 본 호 신설)
 4. 기타 위험관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3인 이하로 구성된 경우 전체 이사가 위원이 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020.05.15. 본 항 개정)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2016.10.10. 본 항 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15.03.04. 본 항 개정)
-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2018.02.05. 본 항 삭제)
- 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포함할 수 있다. (2018.02.05. 본 항 개정)
- ⑦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행하여야 한다.
 - 1.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 2. 위험관리책임자는 의결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2016.10.10. 본 호 신설)
 - 2.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2016.10.10. 본 호 개정)
 - 3. (2016.10.10. 본 호 삭제)
 - 4.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2018.02.05. 본 호 개정)
 - 5. 위험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업무별 위험관리지침의 위반시 조치 (2018.02.05. 본 호 개정)
 - 6.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변경 (2016.10.10. 본 호 신설)
 - 7. 재무건전성비율의 유지기준 설정 및 미달시 대응전략 수립
 - 8. 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2016.10.10. 본 호 개정)
 - 9.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2016.10.10. 본 호 신설)
 - 10.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10.10. 본 호 신설)
 - 11. 위기상황 대처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 12. 총비용 10억원 이상의 위험관리정보시스템 도입 (2018.02.05. 본 호 개정)
 - 13. 위험관리집행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2016.10.10. 본 호 개정)
 - 14.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 15. 삭제 (2015.03.04. 본 호 삭제)
- ② 삭제 (2018.02.05. 본 항 삭제)
- ③ 삭제 (2018.02.05. 본 항 삭제)
- ④ 위원회에서 승인된 이후 해당 안건이 보류 또는 철회되는 경우 해당 현업부서장은 그 사유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상정)

-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현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2. 위험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3. 위험관리담당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2013.06.21. 본 호 개정)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현업부서장과의 사전 합의를 통하여 위원회 상정 안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장과 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하고, 위원회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단, 신속한 의사결정, 자료유출의 제한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일정만을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위험관리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3.12.20. 본 조 신설)

- ① 위원회 산하에 위험관리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집행위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2018.02.05. 본 항 개정)
- ③ 집행위의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집행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을 선임한다
- ④ 집행위는 집행위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제12조(집행위의 운영) (2013.12.20. 본 조 신설)

- ① 집행위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집행위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으로 하여금 집행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집행위에서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④ 간사는 집행위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집행위에 제출된 각종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집행위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행하여야 한다.
 - 1. 위험관리책임자는 집행위 의결 결과에 대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집행위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 ⑥ 집행위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집행위 심의·의결사항) (2013.12.20. 본 조 신설)

- ① 집행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험관리책임자가 상정한 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 진출
 - 2. 업무별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2018.02.05. 본 호 개정)
 - 3. (2016.10.10. 본 호 삭제)
 - 4. 위험측정 또는 가치평가 방법 승인 및 적정성 점검 (2016.10.10. 본 호 신설)
 - 5. (2016.10.10. 본 호 삭제)
 - 6. (2016.10.10. 본 호 삭제)
 - 7. (2016.10.10. 본 호 삭제)
 - 8. 총비용 10억원 미만의 위험관리정보시스템 도입 (2016.10.10. 본 호 개정)
 - 9. 위험관리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2016.10.10. 본 호 개정)
 - 10.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2.05. 본 호 개정)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별 위험관리지침의 제·개정 내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02.05. 본 항 개정)
- ③ (2016.10.10. 본 항 삭제)

-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집행위원장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집행위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집행위에서 승인된 이후 해당 안건이 보류 또는 철회되는 경우 해당 현업부서장은 그 사유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집행위 안건 상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험관리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6.10.10. 본 조 개정)

- ① 위원회 산하에 위험관리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② 투심위 위원(이하 "투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집행위 의결에 의한다. (2018.02.05. 본 항 개정)
- ③ 투심위의 위원장(이하 "투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험관리책임자로 한다. 단,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심위원장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위에서 투심위원장을 선임하고, 투심위원장 부재 시 투심위원장은 집행위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④ 투심위는 투심위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험관리담당부서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두며, 이의 정함은 투심위원장이 하도록 한다.

제15조(투심위의 운영)

- ① 투심위는 제16조에 정한 사항이 발생할 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심위원장 발의로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2016.10.10 본 호 개정)
- ② 투심위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으로 하여금 투심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투심위에서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21.03.09. 본 항 개정)
- ④ 출장 등의 사유로 투심위에 참석하지 못한 투심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투심위 개최 전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투심위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8.02.05. 본 항 개정)
- ⑤ 투심위에 안건을 상정한 임직원이 투심위원인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간사는 투심위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투심위에 제출된 각종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포함할 수 있다.
- ⑦ 투심위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행하여야 한다.
 - 1. 투심위원장은 투심위 의결 결과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투심위 승인 사항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집행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집행위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16.10.10. 본 호 개정)
 - 2. 제1호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호 개정)
- ⑧ 투심위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투심위 심의·의결사항)

- ① 투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험관리책임자가 상정한 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 진출
 - 2.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의 인수
 - 3. 일정 규모 이상인 매입보장이나 지급보증

4. 일정 규모 이상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5. 일정 규모 이상인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6. (2016.10.10. 본 호 삭제)
 7. 기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투심위원장이 투심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체적인 투심위 심의·의결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업무별 위험관리지침에서 정한다. (2018.02.05. 본 항 개정)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투심위원장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투심위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신할 수 있다.
1. 서면 의결
 2. 대표이사 승인
- ④ 제3항의 경우 현업부서장은 위험관리책임자와 그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는 차기 투심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투심위에서 승인된 이후 해당 안건이 보류 또는 철회되는 경우 해당 현업부서장은 그 사유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타 투심위 안건 상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절 위험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2016.10.10. 본 절 개정)

제17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2016.10.10. 본 조 신설)

-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7영업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등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정 및 절차 등
- ⑥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겸직금지) (2016.10.10. 본 조 신설)

-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

제19조(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2016.10.10. 본 조 신설)

- ①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 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임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험관리담당부서의 설치) (2013.06.21. 본 조 개정)

- ① 회사는 위험의 인식, 측정, 분석, 통제 등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위험관리담당부서를 설치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회사의 타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③ 전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담당부서 직원은 현업부서 또는 지원부서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타부서와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④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21조(위험관리담당부서의 구성) (2013.06.21. 본 조 개정)

- 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1. 위험관리업무의 개념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직원
 - 2. 위험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직원
 - 3. 2년 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문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직원 (2011.09.29. 본 호 개정)
- ② 회사는 위험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인사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2020.05.15. 본 항 개정)

제22조(위험관리담당부서의 업무) (2013.06.21. 본 조 개정)

- 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1. 이사회, 위원회, 집행위 또는 투심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 (2016.10.10. 본 호 개정)
 - 2. 이사회, 위원회가 수립한 위험관리 정책 및 전략의 집행, 관찰 및 보고 (2016.10.10. 본 호 개정)
 - 3. 위원회, 집행위 또는 투심위 의사록 작성 및 보관
 - 4. 재무건전성비율의 산정, 주요 변동 원인 분석 및 보고
 - 5. 각종 위험한도의 관찰 및 보고
 - 6. 위험관리 현황의 평가 및 보고
 - 7.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지원부서의 가격평가방법에 대한 사전 점검 (2018.02.05. 본 호 개정)
 9. 위험을 감안한 성과평가 및 보고
 10. 고위험영역의 통제 (2016.10.10. 본 호 개정)
 11.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통제
 12. 과도한 신용집중의 통제
 13. 과도한 부외거래의 통제
 14. 위험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업무별 위험관리지침 위반시의 보고 및 제재 건의 (2018.02.05. 본 호 개정)
 15. 기타 위험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와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23조(위험관리담당부서의 권한) (2013.06.21. 본 조 개정)

- 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험관리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험관리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업무절차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집행위에 건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16.10.10. 본 항 개정)

제3절 현업부서 및 지원부서

제24조(현업부서의 역할)

- ① 현업부서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장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② 현업부서는 거래 체결 후, 전산시스템 입력 등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담당부서와 지원부서에 당해 거래내역 및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③ 현업부서는 부서와 관련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④ 현업부서는 위험한도 변경 및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험관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25조(일선위험관리자의 지정) (2016.10.10. 본 조 개정)

- ① 영업부문 본부장은 관할부서에 대한 위험관리를 책임지며,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선위험관리자를 지정하고 위험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일선위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② 일선위험관리자는 영업부문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1. 위험한도 배분안 마련 (2016.10.10. 본 호 신설)
 2. 포지션 및 위험액 조정, 산정 및 보고 (2018.02.05. 본 호 개정)
 3. 세부적인 운용 및 관련 위험현황과 한도관리 모니터링 (2016.10.10. 본 호 신설)
 4. 자금(유동성) 관리 (2016.10.10. 본 호 신설)
 5. 경영성과 보고에 필요한 위험현황 제공 (2016.10.10. 본 호 신설)
 6.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위험 분석 (2016.10.10. 본 호 신설)
 7. 위기상황시 대응조치 마련 (2016.10.10. 본 호 신설)

8. 위험관리담당부서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위험관리담당부서와 현업부서간 조정기능 수행)
(2018.02.05. 본 호 개정)
 9. 위험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업무별 위험관리지침의 개선 및 보완 건의 등 (2018.02.05. 본 호 개정)
 10. 위험관리담당부서가 요청한 자료 작성 및 제출 (2018.02.05. 본 호 개정)
 11. 기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
- ③ 일선위험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관리담당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016.10.10. 본 항 개정)

제26조(지원부서의 역할)

- ①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의 거래 발생시 회계처리, 결제처리, 거래대사, 보고서 작성 등 거래 관련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의 거래 진위를 확인 후 결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래내역 및 결제업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현업부서 및 위험관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③ 결제담당부서 및 회계담당부서는 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기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거래에 관한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항 신설)
- ④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에서 실행한 거래가 관계법규 등에 따라 불법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행하여서는 안되며, 거래 관련 분쟁은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와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 포지션을 평가함으로써, 견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위험관리 업무

제27조(재무건전성비율의 관리)

- ①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비율을 관리비율이라 하며, 회사는 관리비율을 금융투자업규정 상 경영개선권고 수준 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관리비율로 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재무건전성비율이 관리비율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재무건전성비율이 관리비율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무건전성비율이 관리비율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위험 검토)

- ① 회사는 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 진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취급 상품의 상품성 및 영업전략과의 부합 여부
 2. 가치평가 및 위험 측정 방법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이익 대비 위험의 적정성
 4. 회계, 세무 및 법적 유효성
 5. 업무절차 및 거래기록 방법
 6. 대고객 영업시 유의사항
 7. 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 방안

- ② 신상품 거래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거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0.05.15. 본 항 개정)

제29조(시장위험관리)

- ① 시장위험관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위험 요인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포지션과 위험액 또는 VaR를 부서별 또는 운용목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위험 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018.02.05. 본 항 개정)
- ③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험 측정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사후검증(Back-Test)을 수행하여야 하고, 극단적인 시장가격의 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잠재적 손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수행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④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액 또는 VaR, 민감도 등 시장위험 측정치에 대한 적정 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18.02.05. 본 항 개정)

제30조(신용위험관리)

- ① 신용위험관리는 거래상대방 또는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부도, 계약불이행 등의 신용사건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②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포지션과 위험액을 거래상대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2018.02.05. 본 항 개정)
- ③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익스포저, 신용VaR 등 신용위험 측정치에 대한 적정 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④ 현업부서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용등급 이상의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여야 하고, 담보, 보증, 증거금 협정 등의 신용보강 조치와 상계 등을 통하여 신용위험을 경감시켜야 한다.

제31조(유동성위험관리)

- ① 유동성위험관리는 유동성 변동요인을 예측하여 유동성 위기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고, 유동성 위기시 적절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유동성 부족 사태로 인한 비정상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액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위험변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성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동성비율, 초단기 무담보 차입 비율 등 유동성위험 측정치에 대한 적정 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④ 자금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이하 "자금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단기 현금 소요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현금 및 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위험관리담당부서와 자금담당부서는 유동성위험 한도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자금담당부서는 허용한도 초과시 또는 필요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32조(운영위험관리)

- ① 운영위험관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② 현업부서, 통제부서 및 지원부서 간의 업무분장,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 각 부서의 업무절차는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 ③ 현업부서는 거래기록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단, 자동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가 즉시 기록되고 회사 거래시스템에 신속히 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모든 거래를 그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⑤ 현업부서의 거래로 인한 현금과 증권의 이동은 지원부서의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⑥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포지션 평가에 적용되는 방법론과 변수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⑦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지원부서 및 다른 통제부서와의 효과적인 관계 설정을 통하여 운영위험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⑧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운영위험으로 인한 손실자료를 일관되게 수집, 저장,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33조(법률위험관리)

- ① 법률위험관리는 법규 및 계약의 위반, 법규 및 계약의 잘못된 해석,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② 법률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이하 "법무담당부서"라 한다)는 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법률요건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등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020.05.15. 본 항 개정)
- ③ 현업부서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체결 전 적절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20.05.15. 본 항 개정)
- ④ 법무담당부서는 법적 문서중 회사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확인하여 불리한 조항 발견시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05.15. 본 항 개정)
- ⑤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법무담당부서와의 효과적인 관계 설정을 통하여 법률위험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20.05.15. 본 항 개정)

제34조(평판위험관리)

- ① 평판위험관리는 외부의 여론이나 이미지 악화로 인한 회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주주 및 고객, 언론 등과의 비우호적 관계형성 등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홍보담당부서는 주주, 고객, 신용평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수시로 확인하고, 우호적인 관계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③ 위험관리담당부서는 공시업무를 소관하는 부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 IR업무를 소관하는 부서, 민원처리업무를 소관하는 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평판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35조(시스템위험관리)

- ① 시스템위험관리는 대규모 신용사건 발생, 국가위기상황 발생, 거래 또는 결제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② 국내외 대기업 및 거대 금융회사의 부도 혹은 신용등급하락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대규모 신용사건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제36조(한도관리)

- ① 한도관리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금액을 회사가 감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경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재무상황,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인별 또는 업무별로 각종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전체 한도관리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각종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설정하여야 한다. (2016.10.10. 본 항 개정)
- ④ 고위험영역에 대해 필요시 별도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16.10.10. 본 항 신설)
- ⑤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한도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⑥ 현업부서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 위험한도를 확인하고 위험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성과평가 및 보상)

- ① 회사는 조직별 실적을 손익의 규모 또는 손익률만으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동 실적이 발생한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위험의 규모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적을 조정함으로써 손익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018.02.05. 본 항 개정)
- ② 회사는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보상, 한도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③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성과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결정되고, 기간별 성과결과의 변동이 큰 거래업무에 대해 별도의 성과평가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018.02.05. 본 항 개정)

제38조(위험관리 보고)

- ① 위험관리 보고는 거래 또는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라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위험관리 보고는 회사가 노출된 위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위험관리에 대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시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현업부서와 위험관리담당부서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④ 위험관리 보고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 조회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위기상황 대처)

- ① 위원회는 위기상황 발생시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고객 신뢰 유지 및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상황 대처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위기상황 대처계획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 위기상황 인식 및 단계별 기준, 위기발생시 보고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3.02.20. 본 항 개정)
- ③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전사의 위험경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종합적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제5장 위험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제40조(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 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위험 측정 및 분석, 보고, 한도관리 등 위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은 위험요인별로 통합하여 구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상의 목적으로 위험요인별 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간 연계성 및 상호보완성을 갖도록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은 향후 신상품거래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전체 위험관리 관련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류 등을 일관성 있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위험관리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관리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내부관리 및 검사

제41조(내부감사)

- ① 감사위원회는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담당부서와 위험관리업무의 대상이 되는 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현황, 규정의 준수여부, 위험의 측정방법의 개발 및 지속적 보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06.21. 본 항 개정)
- ② 감사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사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 위반시 조치)

- ① 위험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업무별 위험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위반내용, 위반사유, 사후 대처 내용 등을 명시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위험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위험관리담당부서는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8.02.05. 본 항 개정)
- ②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익의 축소 조정 (2016.10.10. 본 호 신설)
 2. 위험한도의 축소 조정
 3. 신규 포지션 개설 금지
 4. 기존 포지션의 해지
 5. 거래담당자의 거래자격 정지

제43조(지침 등 제정)

위원회 또는 집행위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2016.10.10. 본 조 개정)

[별첨8] 경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및 기능)

- ① 경영위원회는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② 경영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상에 규정된 이사회 전결사항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행사한다.

제3조(선임 및 구성)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 (2016.10.10 본 조 제목 개정)

- ①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제5조(소집)

- ①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2016.10.10 본 항 개정)
- ② 경영위원회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3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경영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계자의 출석)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을 경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6.10.10 본 조 개정)

제7조(결의)

- ① 경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경영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경영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경영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위원은 전항의 위원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경영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 ① 경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또는 팀)장이 한다.

제9조(부의 절차 등)

- 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부의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제5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소집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의사항)

경영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자본 5%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진출
2. 인허가 업무
3. 복지기금의 출연
4.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
5. 자기자본 5% 이하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의 취득, 처분, 건축
6. 지점, 사무소 및 해외사업소의 설치, 이전, 폐쇄에 관한 사항
7. 자기자본 5% 미만의 출자(기투자분의 증액 포함)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단, 영업부서의 영업관련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등은 제외) (2018.1.15 본 호 개정)
8.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1조(통지)

경영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6.10.10 본 조 개정)

제1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별첨9] ESG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SG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역할)

- ① ESG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약칭을 의미한다.
- ② ESG경영이란 주주 및 소비자, 임직원, 거래처,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공존을 추구하며,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에서 건전한 투자 및 기업활동을 전개함을 의미한다.
-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3조(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위원의 이사 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 중 선임한다. 단,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의 이사 임기까지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 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안건의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 및 보고사항)

-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ESG 전략 및 정책
 10.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SG 추진과제 이행 현황
 2.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위원은 전항의 위원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관계자의 출석)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 ① 위원회 간사는 ESG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의사록 작성·보관 등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또는 팀)장이 한다.

제11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이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제정 및 변경 등)

- ①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①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감독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감독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등이 이 규범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5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 ③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제6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④ 회사 및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이사는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이사회가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

- ① 이사회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투자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구체적인 결의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 ③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내 위원회의 시행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0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3.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제12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사 업무 사항에 대한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제3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것
2. 사외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할 것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4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연임 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차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제16조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

-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3.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경우
-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이사회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7조 (이사회 소집절차)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이사는 제1항의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제20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이하 본절에서 “위원회”라 함은 각 조 제목의 위원회를 말한다)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④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 (감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

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⑧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3조 (위험관리위원회)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회계·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 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5.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
- ④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4조 (보수위원회)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 ④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5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6조 (임원의 범위)

1. 이사
2. 지배구조법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자
3. 지배구조법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
4. 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
5.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제27조 (임원의 자격요건)

- ①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적용한다.
-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 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28조 (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 2. 재무, 예산 및 결산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 (업무집행자의 권한과 책임)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3조 (임원의 선임)

-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34조 (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의 임용결정에 따른다.

제35조 (임원의 퇴임)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이사가 그 직무를 하되, 동일 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선임자(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 퇴임에 관하여는 제 16조를 적용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퇴임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사내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6조 (임원에 대한 교육)

- ①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사내의 임원 후보자로 선발된 인원에게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 및 연임의 결정 시 제1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8조 (임원 성과평가)

- ①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임원의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비정량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무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제39조 (임원 보수지급)

-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임원의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40조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한다.

제41조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예정 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도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받아 최종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 (경영승계 절차)

-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41조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부터 최단 시일내에 최종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최종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43조 (비상상황 시 경영승계 절차)

- ①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발생 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2항과 제42조를 적용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44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 ① 회사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 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지원부서는 이사회에 제2항의 업무추진현황을 매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45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 ① 최고경영자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4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① 이사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7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소관한다.
-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탐색, 발굴하고 관리업무를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제48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9조 (최고경영자 임기 및 역할 등)

-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 (최고경영자 퇴임 및 평가)

- ①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 3.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경우
- ②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첨11] 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화투자증권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임직원은 한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며, 신의성실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공정·투명한 업무수행)

임직원은 법령,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익을 수수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동료 존중 및 배려)

임직원은 동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건강·안전한 업무 환경)

임직원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제6조(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비용, 유무형 자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영업비밀 등 회사 정보와 고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회사와의 조화)

임직원은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로 인해 회사와 이해가 상충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 존중)

임직원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믿음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파트너와 상생)

임직원은 사업파트너와의 상생을 통해 동반자로서 상호이익과 발전을 추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사회가치 존중)

임직원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규범과 약속을 존중하여 업무수행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임직원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보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실천사항)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별지1]에서 정하는 실천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1]

실 천 사 항

품위 있고 깨끗한 나, 동료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활기찬 회사, 고객·사업파트너와 동반성장하고, 사회가치를 존중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문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 사항의 준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1.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 회사의 경영이념을 이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합니다.
- 나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명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절제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실천합니다.
- 업무, 일상, SNS활동 등에서 회사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2. 공정·투명한 업무수행

-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법규와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보편적 양식에 따라 행동합니다.
- 모든 정보는 정확·정직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며,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접대 등을 수수하지 않으며, 임직원 사이에서도 금품·향응·접대 등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3. 동료 존중 및 배려

- 동료의 능력과 경험, 다양성을 존중·배려하고, 성별·연령·학력·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 동료에게 고통을 주는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직무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영향력 행사 등으로 근무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4. 건강·안전한 업무 환경

-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무상 사고, 부상, 재해, 질병 등을 예방합니다.
- 업무 집중과 휴식의 조화로운 배분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을 만듭니다.
-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 회사의 재산을 내 것처럼 아끼고, 회사의 예산과 자산을 규정·지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 회사 자금의 횡령 및 사적 유용, 회사 자산의 절도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6. 회사와의 조화

- 거래관계, 고용, 평가 등에 있어 사적 관계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미공개 정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증권·투자상품 거래 등에 활용하여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영리활동에 참여하거나 겸업(이중취업)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7. 고객 존중

- 고객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합니다.
-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합니다.

8. 사업파트너와 상생

-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거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 상호신뢰,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파트너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존중합니다.
-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례한 언사, 부당한 행위 등을 하지 않습니다.

9. 사회가치 존중

- 개개의 행동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합니다.
-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의 활동이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회사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10.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 국제협약, 국제회계기준, ESG 관련 규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널리 이해하고, 해당 지역의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제1편 총칙

제1조(제정 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내지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 3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4.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준법감시인)

-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점장)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관계법령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직원)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통제위원회)

- ①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적용범위)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⑤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 ①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3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1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4조(준법감시인의 임면)

- ①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업무(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18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한다.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9조(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교육과정에는 직무윤리, 투자자 보호,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정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23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의무)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 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 제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검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검직내용의 시정 및 검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내부고발 제도)

-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 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 ①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직무분리기준)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4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30조(영업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법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및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집합투자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① 회사(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회사(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법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4조(신탁업)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신탁업을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유지에 관한 사항

제2절 영업점 통제 및 파생상품 영업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 ①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2.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3.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2.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3.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 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2. 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3. 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4.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⑨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고객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사이버룸의 경우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문패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 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영업점은 영업점의 업무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영업점의 자체점검 방법, 확인사항, 실시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

① 회사는 상근 임원(『상법』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회사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7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①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항제3호에 따라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③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

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

- ① 회사는 영업점별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영업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고객이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객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④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2.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3.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4. 계좌의 실현·미실현 손익규모
 5.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여부 등

제38조의2(파생결합증권 등의 구분 관리)

- ①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절에서 '헤지자산'이라 한다)과 그 밖의 회사의 고유재산(이하 이 절에서 '고유재산'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구분 관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추가연계증권(ELS)·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및 기타파생결합증권(DLS)·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으로 구분하고, 헤지자산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중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헤지자산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별도의 구분자 부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현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2. 내부 대여금·차입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거래기록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내부대여금·차입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헤지자산 : 운용자산별 북(Book) 또는 구분자 부여, 운용자산별 보유계좌 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운용자산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④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헤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항목을 가감하고, 헤지자산 운용 손익은 연 1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위하여 수시로 헤지자산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 ① 회사는 제38조의2에 따른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헤지자산과 기타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고,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산출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 내 다른 전산시스템과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사전에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하여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등의 작업이 수행된 후에는 그 작업에 대한 접속기록 및 작업 내용 등 관련 기록을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제38조의4(투자대상자산의 요건)

- ① 회사는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단, 신용평가 등급 기호가 +, -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경우 하위 등급을 포함하며, 신용평가등급 기호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 명시된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1.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및 단기신용등급(만기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2
 -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BBB 및 단기신용등급 A2
 - 3. 헤지자산운용담당부서와 독립적인 기업평가 담당 내부통제부서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 ③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를 위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부적합 헤지자산으로 정하고 헤지자산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시장성 및 유동성이 떨어져 단기간내 처분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자산
 - 2.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비상장주권(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 3.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동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4. 처분 및 상환에 제한조건이 있는 자산
 - 5. 취득시점 현재 투기등급으로 지정된 부실자산 또는 부실의 현저한 징후가 보이는 자산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항에서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단, 상장주식은 제외한다)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 증권.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가능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기타 헤지자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헤지자산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산의 총 합계액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0과 10,000억원 중 큰 금액 이하 이어야 한다.
 - 1.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20과 500

억원 중 큰 금액 이하

2. 제38조의4제3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30과 700억원 중 큰 금액 이하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자산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20과 500억원 중 큰 금액 이하

4.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자산(단, 예금·예치금 및 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발행잔액의 100분의 20과 500억원 중 큰 금액 이하

⑤ 회사는 헤지자산을 채무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종에 따른 채무증권 종류별(채무증권의 종류는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참조한다)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2. 투자가능 최저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⑥ 회사는 헤지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10에 따라 산정한 회사의 유동성비율이 100%이상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포함된 리스크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한 의결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채무증권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⑧ 리스크협의체는 제7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헤지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2. 파생결합증권 상환자금의 조달에 미치는 영향

3. 헤지자산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

제38조의5(헤지자산의 분산운용)

① 회사는 추가연계증권(ELS)·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기타파생결합증권(DLS)·기타파생결합사채(DLB) 관련 헤지자산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헤지자산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8이하(2022년 12월 30일까지 100분의 15이하,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2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카드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D)

2.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캐피탈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E)

② 회사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의 발행분을 포함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8조의6(외화유동성 확보)

① 회사가 해외 주가지수, 금리, 통화, 일반상품 등(이하 “해외지수등”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추가연계증권(ELS) 또는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고 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자체 헤지하는 경우(이하 “해외지수등의 자체 헤지”라 한다) 회사는 해당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총액(대차대조표상 매도파생결합증권 부채잔액 중 해당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외화자산(미국 달러, 유로, 엔, 홍콩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20 이상(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외화현금
 2. 외화예금
 3. 미국 국공채(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한 미국 국공채를 포함한다)
 - 가. 대여자가 증권회사 이외의 자일 것
 - 나. 대차거래의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상환 기한이 1개월 이상일 것
 - 다. 대차기간 중 반환은 차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
 - 라. 해외거래소에 납부하기 전에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할 것
 - 마. 해외거래소에 증거금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약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유사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체결한 다음 각 목의 계약(거래상대방의 외화 제공 의무가 명시된 계약에 한한다) 금액
 - 가. 외화 대출계약
 - 나. 통화스왑 또는 외환스왑에 대한 계약
 - 다.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에 대한 계약
 5.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를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 대상증권
 6. 수시 또는 익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외화 순유입 금액
 - 가.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 나. 외화 발행어음
 - 다. 외환선도, 외환스왑, 통화스왑
 - 라.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외화 투자일임재산,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영하는 외화 특정금전신탁재산(해당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인출 가능금액으로 한한다)
 7. 해외거래소에 납부한 증거금 중 출금 가능금액
 8. 현물환 매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순미수금 중 익 영업일 결제 금액
- ② 회사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의 발행분을 포함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확보와 관련하여 회사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외화자산은 헤지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위기상황 대응계획(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사가 수립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가동하여 제1항의 외화자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익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7(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 확인)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절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제39조(투자자계좌 관리·감독)

-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

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그 내용의 타당성
 4.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② 회사는 과당매매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해당 계좌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 대상계좌의 선정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③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위·변조 증권의 입고 및 착오주문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계좌에서의 매매주문 차단 및 수탁거부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정의)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매매주문을 생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하드웨어)를 말한다.
4. “거래소 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6.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7. “호가제출시간”이란 호가가 대외계시스템(FEP)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회사의 대외게시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 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 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계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의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자의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41조(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관리)

- 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및 법시행령 제 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2항의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은 보호예수기관에 보호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당해 기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① 회사는 증권 및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락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락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회사는 제3항(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락거절 사유를 계좌개설 시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 ⑥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 및 중개회사 선정기준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 ②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 제112조(의결권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 ④ 회사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2항 단서는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 등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 없이 중개회사 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

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절 투자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제46조(투자광고 방법·절차)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법인 영업)

①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2. 허수 매매주문 수탁
 3. 고유계정과 금융투자상품 연계매매를 통한 부당이득 제공 또는 손실보전 행위
 4. 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5. 기타 관계법령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거래
- ② 회사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자신이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또한 집합투자증권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 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는 집합투자증권별로 판매보수율 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상수익률의 보장
2.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3.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 ① 임직원은 고객이 채무증권을 입고하는 경우 위조, 변조, 도난 신고가 접수된 채무증권 인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당일 신규로 개설된 계좌 또는 계좌개설 후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 채무증권이 입고된 후 당일 매도되거나 또는 매도 후 즉시 출금(일부출금 포함)요청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예탁결제원에 사고 채무증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1절 일반원칙

제50조(고객이익 우선)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정보의 유지·관리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 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정보차단벽

제1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문

제56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등의 총액과 증권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이 기준 또는 관련 세칙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경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8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① 회사는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8조 및 제15조는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 준용한다.

제60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

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관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제61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2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0조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64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 ① 제63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관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관리 및 상시 감시 등

제65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66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관 사외 정보교류 차단

제67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62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제63조 및 제64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8조(복합점포 설치·운영)

-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56조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9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0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관 기타

제71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2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73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66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4조(기본원칙)

-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⑥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법 제286조(업무) 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을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 ⑧ 회사는 착오주문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의 매매주문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제77조(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8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9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고객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0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CDD)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정보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제와 내부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와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 ①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이 기록된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③ 회사가 금융거래 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종류, 거래일자, 통화종류, 거래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자료 등

④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⑤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① 회사는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1조(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등) 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회사는 임직원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민원 및 분쟁 처리

제87조(고충처리 정책)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8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 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 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절 전산시스템

제92조(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 ① 회사의 전산설비는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IT담당 임직원은 전산화된 매매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2.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 보안의 적정성
 3. 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4. 매매주문 전산처리 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93조(보안관리)

- ①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 유무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
 2. 전자금융 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지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영실태
 3.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및 운영실태
 4. 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유무 및 실효성
 5. 복구전담팀의 운영 여부
 6.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 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 ②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키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IT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부서 이동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 ①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 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절 대표주관회사 업무

제95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 방지)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6조(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내실있는 기업실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동안 기업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3개월
2.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0조 제2호 나목에 따른 투자적격등급을 말한다)이상인 무보증사채 발행의 경우 3영업일
3. 그 외의 경우 7영업일

제97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실사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은 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1. 인수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업금융업무(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외국 변호사 포함)
4. 공인회계사(외국 공인회계사 포함)
5. 금융투자분석사(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를 말한다)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절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경영

제98조(이해상충방지)

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한한다. 다만, 자기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운용하는 경우 자기 또는 특정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이 매 사업연도 별로 총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전담중개업무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특정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기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로 선정하거나 자기와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타사에 지급하는 동종의 수수료율 상한을 초과하는 행위
4.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권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매도하는 행위

제99조(내부통제)

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부문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문과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을 사용할 것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부문과 미공개 중요정보를 생산·취득하는 부문간에 정보를 교류한 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것.

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4.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과 관련된 법규 및 협회의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 라인」 준수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다만,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이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0조(운용성과보고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용성과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용기간 중 주식의 매매 회전을
2. 해당 운용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자신 포함)에게 지급한 수수료
3.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해당 운용기간 중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4. 해당 운용기간 중 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종목 중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매수·매도 상위 10개 종목명

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

제1절 불공정거래 행위

제101조(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02조(임직원 금지사항)

- ① 임직원은 제98조 각 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제98조 각 호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매매거래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정보이용 교란행위

제103조(정의)

- ① “정보이용 교란행위”란 법 제1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 ② “중요정보”란 법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104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중요정보”와 관련한 정보차단벽 설치·운영,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및 정보차단벽 통과 등에 대해서는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 ③ 회사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65조의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등재하여 임직원의 매매거래 및 회사의 고유 재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이 “중요정보”와 관련된 사내 및 사외 회의, 통신행위를 하는 경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제105조(정의)

- ①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 ②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란 IT,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6조(점검시스템 구축·운영)

회사는 제102조제1항의 “시세관여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7조(알고리즘 거래 관리)

- ①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프로그램 사용 전에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로부터 “시세관여 교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매매주문 기법의 포함 여부 등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 사용자의 임의변경,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시세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프로그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자가 별도로 구입한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공통사항

제108조(예방교육의 실시)

회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9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별첨13] 내부거래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당사”)가 계열회사(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계열회사”)와 거래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거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적용되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또는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당사와 국내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
2. 당사와 해외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 중 개별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거래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해외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 중 연간 누적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거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열회사”란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국내·외 회사를 말한다.
2. “거래주관부서”란 계열회사간 거래에 대한 주관, 품의서 및 검토문서 작성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심의담당부서”란 내부거래심의업무를 주관하는 본사 경영관리담당부서를 말한다.
4. “입찰”이란 사규 「구매 및 자산관리 업무규정」에서 정의하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말한다.
5. “수의계약”이란 사규 「구매 및 자산관리 업무규정」에서 정의하는 “수의계약”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 ① 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간 거래 및 관련 거래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당해 거래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② 심의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록 및 자료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③ 거래주관부서는 계약 체결 전 당해 거래 유형을 파악하고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부거래 심의 양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

제5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기획관리담당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경영관리, 재무관리, 법무,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③ 간사는 경영관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국외체류,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소속부서원 중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전항의 규정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결권)

안건을 부의한 거래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인 경우 그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원이 분장할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 국외체류, 기타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경영관리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월의 정기위원회 안건이 없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영관리 담당부서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소명하여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개최절차)

-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심의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을 기재하고,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제11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를 생략하고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의 제출)

- ① 거래주관부서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재된 서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거래의 경우 아래 2호 및 5호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한다.
 1. 안건 및 제안 이유가 기재된 서류
 2. 거래의 필요성
 3. 거래 상대방의 역할 (통행세 여부)
 4. 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의 적정성
 5.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
 6. 기타 거래와 관련된 일반 사항 등
- ② 거래주관부서는 당해 거래가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 결의 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주관부서는 법무부서의 검토의견이 기재된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방법)

- ①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전원 출석 및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부의안건을 작성한 거래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 및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심의 및 의결을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진행된 거래
 2. 거래금액이 2억원 미만인 거래
 3.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반복하는 동종 거래로서 연간 누적 거래금액이 5억원 미만인 거래
 4. 그 밖에 전쟁,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 ④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경우 거래주관부서는 당해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거래주관부서가 부결 사유를 보완하여 차회 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한 경우로서 차회 위원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부의대상)

- 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는 이 규정에 따라 부의대상이 된다.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내 동일한 내용으로 거래되었거나 향후 1년 간 동일한 내용으로 거래될 것이 예정된 반복적인 거래는 이 규정에 따라 부의대상이 된다.
 1. 개별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거래
 2. 유가증권 거래 중 공모사채 발행 등 계열회사를 제외한 비계열회사가 1개 이상 포함되는 거래
 3.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이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상의 정형화된 거래
 4. 가격을 포함한 계약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기본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기본 계약의 세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거래(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5. 상품 및 용역에 대한 가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상품 수량 또는 용역 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존 계약의 총 거래금액만 변경되는 거래로서 총 거래금액이 2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증가하거나, 총 거래금액이 감소하는 거래(총 거래금액이 감소하는 거래의 경우 20% 미만의 범위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6. 기타 위원장이 인정한 거래
- ② 거래주관부서 및 심의담당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개별적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로서 반복되는 동종의 거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내용을 포괄하여 부의할 수 있다.
- ③ 거래주관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거래주관부서는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심의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등)

-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심의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심의 종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거래원칙)

- ① 매입 거래의 대상 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누적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거래는 수의계약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락 등 경쟁입찰을 거쳐 거래를 하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의 제조자와 거래하는 경우
 - 3.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5.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6.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7. 기업집단의 이미지 통일 및 표준화 계획 또는 경영정책상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8. 입찰공고 후 입찰자가 1인이거나 참가자가 없어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재차 참여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 9.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 10.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1. 기타 거래주관부서가 계열회사와 거래 전 법무부서에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법무부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거래주관부서에 발송한 경우
- ③ 수의계약으로 거래할 경우 사규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를 한단계 상향한다. 다만, 대표이사 이상 전결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환경규정은 (주)한화투자증권 (이하 ‘당사’라 한다.)이 KS I ISO 14001:2015 규격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환경 친화적 기업을 달성할 목적으로 기술되어 지속적인 개선과 부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에 정의되지 않은 환경 관련 용어는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에 따른다.

1. “지속적 개선”이라 함은 조직의 환경방침에 따라 전반적인 환경 성과의 개선을 위해 환경경영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환경”이라 함은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群), 동물군(群), 인간 및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 등을 포함한 조직의 주변 여건을 말한다.
3. “환경측면”이라 함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의 활동, 상품 및 부가서비스 요소를 말한다.
4. “환경영향”이라 함은 조직의 활동, 상품 및 부가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소를 말한다.
5. “환경경영체제”이라 함은 환경방침을 개발검토, 실행, 달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조, 계획 활동, 책임, 절차, 공정 및 자원 등을 포함하는 전체 경영체제를 말한다.
6. “환경경영체제 심사”라 함은 조직의 환경경영체제가 조직에 의해 설정된 환경경영체제 심사기준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경영자에게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검증과정을 말한다.
7. “환경 목표”라 함은 환경방침에 근거하여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량화하여 설정한 환경 목표를 말한다.
8. “환경 성과”라 함은 조직의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를 기초로 한 조직의 환경측면과 위험요인 관리와 관련된 환경경영체제의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말한다.
9. “환경방침”이라 함은 조직의 환경 목표와 세부목표의 설정 및 활동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환경 성과와 관련된 조직의 의지 및 원칙을 기술한 설명서를 말한다.
10. “세부목표”라 함은 환경목표에 따라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설정하고 정량화한 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 가능한 세부적인 환경 성과 요건을 말한다.
11. “이해 관계자”라 함은 조직의 환경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오염방지”라 함은 오염을 막고, 감소시키며 통제하는 공정, 관행, 자재 또는 상품의 사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재생, 처리, 과정변경, 통제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자재 대체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13. “위험요인”이라 함은 인적 상해 또는 직업병, 또는 이들의 조합된 형태로 유해한 잠재성을 가진 원천, 상황 또는 활동을 말한다.
14. “위험요인 파악”이라 함은 위험요인의 존재를 인식 및 그 특성을 규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15. “리스크”라 함은 불확실성 영향을 말한다.
16. “전 과정”이라 함은 천연자원으로부터 원료의 획득 및 생성에서 최종처분까지 상품(또는 서비스) 시스템의 연속 또는 연결된 단계를 말한다.

제3조(리더십과 의지표명)

대표이사 및 주관부서장은 다음사항을 통하여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 표명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함
2. 환경방침과 목표가 수립되고, 당사의 상황과 전략적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인하고 관리
3.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당사의 해당 경영 프로세스와 통합되도록 확인 및 관리
4. 환경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 및 기타 자원의 가용성 보장
5. 효과적인 환경 경영의 중요성과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의사소통
6. 환경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경영검토 등을 통해 확인
7.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 및 지원
8.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 개선을 촉진
9. 부서장 및 관리자의 해당 책임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경우 그들의 리더십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에 대한 지원

제4조(환경방침)

① 회사의 환경방침은 [별표1] 서술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환경 방침이 다음과 같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하고, 활동·서비스 및 상품의 특성, 규모 및 환경영향에도 적절할 것
 2. 환경목표의 설정을 위한 틀을 제공할 것
 3. 오염예방과 그 밖의 조직의 상황과 관련된 다른 구체적인 의지를 포함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실행 의지를 포함할 것
 4. 준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실행의지를 포함할 것
 5. 환경성과 증진을 위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실행의지를 포함할 것
- ② 대표이사는 환경방침을 최종 승인 및 공포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환경 방침을 다음과 같이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당사의 목적과 상황 및 전략적 방향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방침을 개정
 2.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인원들에게 의사소통 및 적용하도록 할 것
 3. 요청하거나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하게 할 것

제5조(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① 대표이사는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이 KSISO 14001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고 환경성과를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과 권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당사의 환경경영 관련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은 당사 사규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에 의한다.

③ 환경경영 주관부서는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변경 전까지는 경영관리팀으로 하며, 주요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 이슈 및 이해관계자 요구파악
2. 환경영향 평가 취합
3. 환경 목표 및 개선활동 계획 수립
4. 관련 법규 등록 및 배포 관리
5. 환경 규정 및 관련 절차서의 제·개정 배포
6. 환경 경영 시스템 연간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실행
7. 내부심사 주관
8. 경영검토 안건 취합 및 경영자 보고

④ 환경경영 운영관리(협력업체)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주요 환경 측면의 운영관리
2. 배출 시설 신고 관리
3. 주요 환경 측면의 모니터링 및 측정
4. 준수의무에 대한 준수평가 관리
5. 비상 사태 대비 및 대응 훈련 주관
6. 법정 교육의 이수 및 관리
7. 관련 기관 의사소통

⑤ 환경경영 해당부서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해당부서 환경영향 평가 및 주요 환경 측면 파악
2. 주요환경 측면의 목표에 따른 개선 활동
3. 교육훈련 참여
4. 환경 운영관리에 따른 관련부서 의사소통 및 참여

제6조(요구사항 대비 문서목록)

본 사규는 KSISO 14001:2015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ISO 14001:2015의 요구사항은 [별표2], 요구사항 대비 문서목록은 [별표3]과 같다.

제7조(환경경영 지침)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규정과 절차서는 환경경영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조직의 상황

제8조(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 ① 해당부서장은 회사의 경영 목적 및 전략적 방향과 관계가 되는 내·외부의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영향을 주는 내부와 외부 이슈를 파악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해당부서장은 내부 및 외부 이슈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① 해당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한 당사의 능력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 환경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다음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2. 이들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요구사항)
 3. 이들 중 적용되는 준수 의무사항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니즈 및 기대
- ② 해당부서장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 ③ 주관부서장은 결정되거나 변경된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해야 한다.
 1. 당사 환경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시 반영 또는 필요 시 이를 반영하여 적용범위 변경
 2. 환경 방침 수립 시 반영 또는 필요 시 이를 반영하여 방침 변경
 3. 환경경영시스템 기획 시 반영 또는 이를 반영하여 환경경영시스템 변경
 4. 경영검토 입력정보에 반영

제10조(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 ①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의 경계 및 적용 가능성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8조에 언급된 내부 및 외부 이슈
 - 2. 제9조에 언급된 준수 의무 사항
 - 3. 당사 조직의 부서 단위, 기능 및 물리적 경계
 - 4. 조직의 활동, 상품 및 서비스
 - 5. 관리와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의 권한과 능력
- ② 제1항에서 고려된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및 경계는 아래와 같다
 - 1) 적용 범위: 금융투자 또는 금융투자 서비스
 - 2) 경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3) 회사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에 따른 요구사항은 ISO14001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1조(환경경영시스템)

- ① 주관부서장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여러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② 해당부서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때에는 제8조와 제9조에서 습득한 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의 세부사항은 [별표4] 환경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맵과 환경경영 지침의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절차서에 의한다.

제3장 기획

제12조(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① 일반사항
 - 1. 환경경영시스템을 기획할 때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준수 의무사항과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고려해야 하며, 환경경영주관부서 및 해당부서장은 다음사항을 위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환경측면, 준수 의무사항 및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준수 의무사항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해야 한다.
 - 가. 환경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줌
 - 나. 당사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여건의 잠재 가능성을 포함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거나 감소 시킴
 - 다.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
 - 2.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내에서 조직은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규명하여야 한다.
 - 3. 환경경영주관부서 및 해당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해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가.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는 리스크 및 기획
 - 나. 당사에서 필요한 본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요구된 프로세스
- ② 환경측면
 - 1. 환경경영주관부서 및 해당부서는 전 과정 관점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관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의 활동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과 그와 연관된 환경영향을 결정해야 한다.

2. 환경측면을 결정할 때, 해당부서는 다음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가. 계획된 또는 새로 수립된 변경사항과 신규 또는 수정된 활동 및 서비스
 - 나. 비정상적인 조건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상상황
 3. 해당부서는 수립된 환경영향의 중대성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환경에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즉, 중대한 환경측면을 결정해야 하며, 부서원들에게 중대한 환경측면을 의사소통 해야 한다.
 4. 해당부서는 다음을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가. 환경측면 및 관련된 환경영향
 - 나. 중대한 환경측면을 결정하는 사용한 환경영향의 중대성 평가기준
 - 다. 중대한 환경측면
- ③ 준수 의무사항
1. 환경경영주관부서는 다음의 법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 가. 당사의 환경측면과 관련된 법 준수 의무사항
 - 나. 사업 연속성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2. 환경경영주관부서 및 해당부서는 이들 법규 요구사항이 당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해야 하며,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할 때 해당 법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3. 환경경영주관부서는 이들 관련 법규를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조치계획
1. 환경경영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는 다음을 계획하여야 한다.
 - 가. 다음 사항을 다루기 위한 조치
 - 1) 중대한 환경측면
 - 2) 법규 의무사항
 - 3) 본조 제1항에서 파악된 리스크 및 기회
 - 나. 다음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 1) 상기 조치를 환경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다른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실행
 - 2) 이러한 조치를 완료 후 효과성 평가
 2. 이러한 조치를 계획할 때, 각 해당부서는 당사의 기술적인 방안과 재무적, 운용상 및 사업상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환경목표와 환경목표 달성의 기획)

① 환경목표

해당부서장은 환경경영시스템 업무 및 프로세스와 관련된 환경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목표 수립시에는 제12조에서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 및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환경방침과의 일관성이 있을 것
2. 측정 가능할 것
3.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될 것
4. 필요 시 갱신될 것

② 환경목표달성을 위한 조치 기획

해당부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기획 시 다음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 달성 방안 및 수단
2. 필요한 자원(비용, 물적, 기술적 및 인적 자원 등)
3. 추진 책임자
4. 완료 시기

5.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포함한 결과 평가 방법

- ③ 환경목표는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해야 하며, 각 해당부서는 필요 시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방안이 관련 프로세스(규정 및 절차)에 통합 가능할 경우 이를 해당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본 조의 세부사항은 환경경영 지침의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절차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서, 법규관리 절차서, 목표관리 절차서에 의한다.

제4장 지원

제14조(지원)

환경경영 주관부서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 1. 환경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의 파악 및 지원
- 2. 환경 관련 교육계획 및 이력관리

제15조(역량/적격성)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 1.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당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필요한 적격성을 결정
- 2. 이들 인원이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함을 보장
- 3.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교육훈련 니즈를 결정
- 4. 적용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적격성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 5. 적격성의 증거로 적절한 기록을 보유

제16조(인식)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당사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교육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인식 방법과 수단을 통해 다음사항을 인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1. 환경방침과 관련된 목표
- 2. 개선된 성과의 이점을 포함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
- 3. 법규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포함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의 영향

제17조(의사소통)

①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환경관련 의사소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을 결정해야 한다.

- 1. 의사소통 내용 및 시기
- 2. 의사소통 대상 및 방법
- 3. 의사소통 담당자
- 4. 문서화된 안전보건 관련 의사소통 정보의 접수, 유지 및 대응 방법

② 내부 의사소통: 환경경영주관부서는 다음을 실행하여야 한다.

- 1. 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을 포함하여 조직의 다양한 계층과 부서 간에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내부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의사소통
- 2. 당사의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당사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

3. 의사소통 프로세스 수립 시 환경 법규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소통 되는 환경정보가 경영 시스템 내에서 작성된 정보와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또한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정보를 외부와 의사소통해야 한다.
4. 해당부서는 의사소통시 언어, 문화, 읽고 쓰는 능력 및 장애 등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5. 정보 종류별 내부 의사소통 책임, 대상 및 의사소통 시기는 [별표5]에 따른다
6. 내부 의사소통 방법: 내부 의사소통 정보 종류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책임자가 내부 의사소통 방법을 결정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과업 시작 전 조회 시 구두 전달, 메신저, E-MAIL, 유선, 게시판에 게시 등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 ③ 외부 의사소통: 환경경영 주관부서는 수립된 의사소통 프로세스 및 해당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와 의사소통 해야 한다.
 1. 정보 종류별 의사소통 책임, 대상 및 의사소통 시기는 [별표6]에 따른다
 2. 외부 의사소통 방법: 외부로부터 접수된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은 [부속서 1] 1.2의 내부의사소통 방법에 따르며, 외부 전달 정보에 대한 외부 의사소통 방법은 정보 종류 및 의사소통 대상에 따라 공문, 메신저, E-MAIL, 유선 또는 방문 구두 전달 등의 방법 등이 있으며 의사소통 책임자가 의사소통 방법을 결정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제18조(문서화된 정보)

① 일반사항

문서관리는 문서관리지침(사내규정) 및 문서분류 및 보존관리지침(사내규정)을 따르고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문서는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이 다음을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
2.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당사가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

② 작성 및 갱신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 또는 갱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문서 제목, 일자, 작성자 또는 문서번호 등과 같은 식별 및 내용
2.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과 같은 형식 및 종이, 전자 매체 등의 매체
3. 지정된 자에 의한 적절성 및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③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1.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당사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다음 사항이 보장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 필요한 장소 및 필요한 시기에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

나. 기밀유지 실패,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 훼손으로부터 충분하게 보호될 것

2.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가.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

나. 가독성 보존을 포함한 보관 및 보존

다. 버전관리 등의 변경 관리

라. 보유 및 폐기

3.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환경경영시스템의 기획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외부 출처의 문서화된 정보는 결정, 입수 및 활용하고 적절하게 식별하고 관리해야 한다.

4.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적합성의 증거로서 보유 중인 문서화된 정보를 의도하지 않은 수정으로부

터 보호해야 한다.

5. 당사에서는 유지해야 할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문서”라 칭하고, 보유해야 할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기록”이라 칭한다

④ 일반문서의 문서 번호 부여 체계는 사규처리 및 문서처리 규정에 따른다

⑤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 문서체계는 [별표7] 과 같다

⑥ 본 조의 세부사항은 사규 문서관리 지침 및 문서분류 및 보존관리절차지침과 환경경영 지침의 인적 자원관리 절차서, 의사소통 절차서에 의한다.

제5장 운영

제19조(운영기획과 관리)

① 환경경영 주관부서는 다음을 통하여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본 규정의 제12조 및 제13조에 기술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프로세스를 위한 운용기준 수립

2. 운용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 관리를 실행

② 환경경영주관부서는 다음사항과 관련된 계획된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의도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결과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모든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시설 등의 계획된 변경

2. 외주제작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의 변경

3. 환경법규 요구사항의 변경

4. 중대한 환경 측면 및 환경영향의 변경 등

③ 외주업체 선정 관련부서는 외주처리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외주 처리 프로세스에 적용될 관리나 영향의 유형과 범위는 각 해당 규정에 기술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환경경영주관부서는 전 과정 관점과 일관되게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사의 환경 요구사항이 각 전 과정 단계를 고려하여 상품의 설계 프로세스에서 다루어 짐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방법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립

2. 서비스 및 상품의 조달에 대한 당사의 환경 요구사항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

3. 당사의 환경 관련 요구사항을 계약자를 포함한 외부 공급자와 의사소통

4. 당사 서비스 및 상품의 잠재적인 중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의 제공 필요성을 고려

⑤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프로세스가 계획된 대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규정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제20조(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① 환경경영 운영부서는 제12조에서 파악된 잠재적인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②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사항을 수행하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비상상황으로부터 환경 악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통한 대응 준비

2. 실제 비상상황에 대응

3. 비상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비상사태와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크기에 적절한 조치 시행

4. 실제로 가능한 경우, 계획된 대응조치를 주기적으로 연습

5. 특히, 비상사태 발생 또는 연습 실시 이후, 주기적으로 대응 프로세스와 계획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개정

- 6.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타당한 정보와 교육훈련을 조직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
- ③ 해당부서는 프로세스가 계획된 대로 실행됨을 확신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필요한 규정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 ④ 본 조의 세부사항은 환경경영 지침의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의한다.

제6장 성과평가

제21조(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① 일반사항
 - 1.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가. 모니터링 및 측정의 대상 항목
 - 나.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방법
 - 다. 환경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필요한 지표
 - 라.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기
 - 마. 모니터링 및 측정 수행 시기
 - 2.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을 주관하여 평가해야 한다.
 - 3. 해당부서는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의 증거로 적절한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 4. 환경경영주관부서 및 해당부서는 환경성과 정보를 의사소통관리 규정과 법규 요구사항의 요구에 따라 내부와 외부에 의사소통 해야 한다.
- ② 준수평가
 - 1. 환경경영주관부서는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평가하기 위해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규정된 주기로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준수평가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2. 환경경영주관부서는 준수평가를 수행하고 준수평가 결과 법규 위반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사의 준수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유지하고 관련 인원들에게 의사소통 해야 한다

제22조(내부심사)

- ① 일반사항: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 1. 경영시스템에 대한 당사 자체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 2.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 3.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 ② 내부심사 수행
 - 1. 환경경영주관부서는 내부심사에 대한 주기 및 방법, 책임, 요구사항의 기획 및 보고를 포함한 심사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 2. 심사 프로그램에는 관련 프로세스의 중요성, 당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과 이전 심사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 3. 환경경영주관부서는 내부심사를 기획하고 수행 시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 가. 심사기준 및 개별 심사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
 - 나.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원 선정 및 심사 수행
 - 다. 심사 결과가 관련 경영자에게 보고됨을 보장
 - 라. 과도한 지연 없이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 실시

마. 심사 프로그램의 실행 및 심사결과의 증거로 관련 기록을 보유

제23조(경영검토)

- ① 일반사항: 대표이사는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 및 당사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정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당사의 경영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 ② 경영검토에는 다음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주관부서는 환경경영시스템의 검토를 위한 입력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야 하며, 경영 검토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1. 이전 환경경영검토에 따른 조치의 상태
 2.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외부 변화
 - 가.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
 - 나. 준수의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 및 기대
 - 다. 회사의 중대한 환경측면
 - 라. 리스크 및 기회
 3. 환경목표의 달성 정도
 4. 조직의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
 - 가. 부적합 및 시정조치
 - 나.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 다. 준수의무의 충족상태
 - 라. 심사결과
 5. 자원의 충족성
 6. 불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의사소통
 7. 지속적인 개선 기회
- ③ 환경경영검토 결과의 출력사항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결론
 2. 지속적인 기회와 관련된 결정
 3. 자원을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의 모든 변경 요구사항에 관련된 결정
 4. 환경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필요한 조치
 5. 환경경영시스템 및 다른 경영프로세스와의 통합으로 개선될 기회 파악
 6.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제시
 7. 경영검토 결과의 근거로 문서화된 정보는 경영검토 절차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본 조의 세부사항은 환경경영 지침의 성과관리 절차서, 내부심사 절차서, 경영검토 절차서에 의한다.

제7장 개선

제24조(개선)

환경경영 주관부서장 및 해당부서장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 기회를 결정하기 위해 개선의 기회를 규명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제25조(부적합 및 시정조치)

- ① 환경경영 주관부서장은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불만족에서 야기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1. 부적합이 발견되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부적합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나. 부정적 환경 및 악영향의 완화를 포함한 결과를 처리할 것
- 2.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다음 사항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 가.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 나. 사고 또는 부적합 원인의 결정
 - 다. 유사한 사고 또는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
- 3. 필요한 모든 조치의 실행
- 4. 필요 시 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
- ② 시정조치는 직면한 부적합의 영향의 중대성에 적절해야 한다.
- ③ 해당부서는 다음 사항의 증거로 관련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 1. 부적합의 성질 및 취해진 모든 후속조치
 - 2. 모든 시정조치의 결과

제26조(지속적 개선)

- ① 환경경영 주관부서장과 해당부서장은 환경경영 및 사업 연속성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② 본 조의 세부사항은 환경경영 지침의 시정조치 절차서에 의한다.